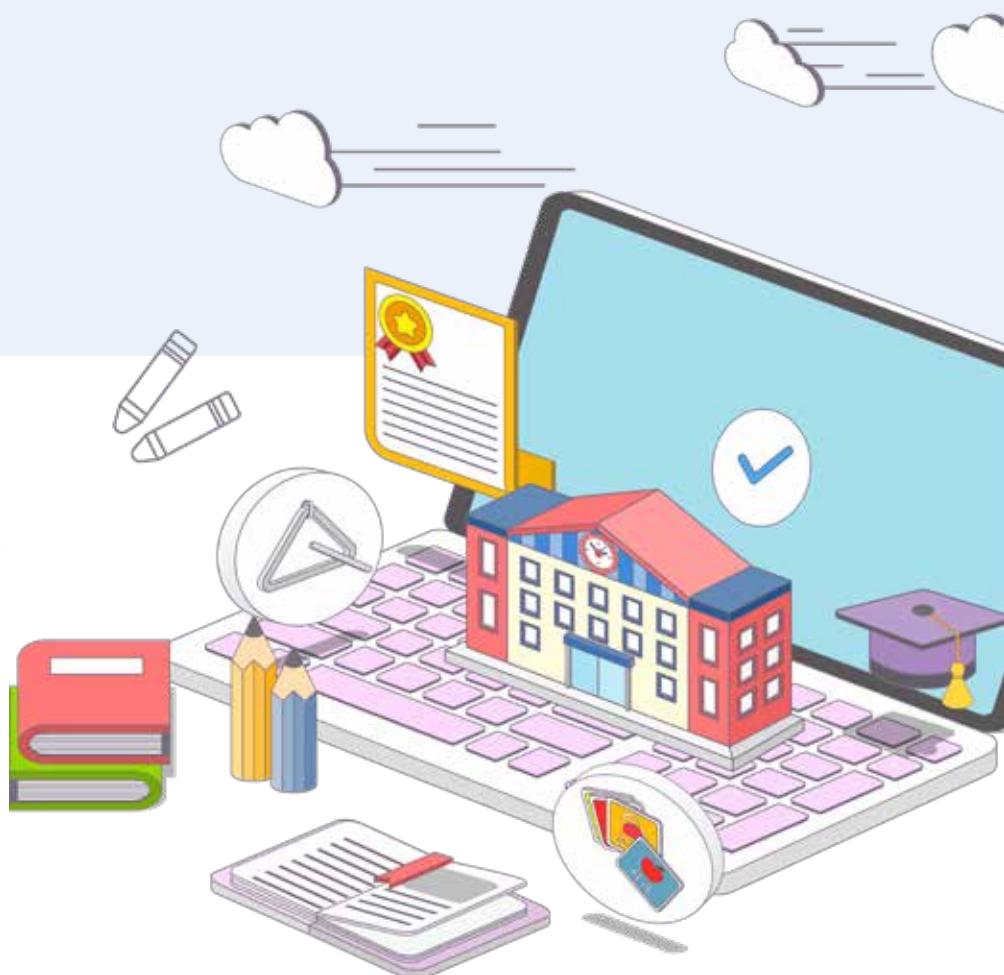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Contents

I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6
2장. 사안처리 흐름도	8
3장. 사전 예방 활동	10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5

IV

조치결정 및 이행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60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60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63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64

II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약	18
1장.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22
1. 학교폭력 인지	22
2. 신고 및 접수, 보고	23
3. 학교의 대응 요령	25
2장. 사안조사	31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31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34
3.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38
4. 긴급조치	40
5. 학생 및 보호자 상담	42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65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69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72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74
1. 기재 및 기재유보	74
2. 기재내용 삭제	76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 행정심판	80
2. 행정소송	81

[참고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

[참고2]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방안

[참고3]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록 및 이행

III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50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50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51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53
1. 관계회복	53
2. 분쟁조정	55

부록

[부록1] 피해학생 보호 · 지원	90
[부록2]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양식 목록 및 세부사항	91
[부록3]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151
[부록4]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165
[부록5]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167
[부록6]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188

I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2장. 사안처리 흐름도

3장. 사전 예방활동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内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본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법률'로 표기함.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표기하기로 함.

용어 정의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학생"은 학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 ※ 이후 모든 시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음.
 - ※ 단, 졸업식을 했더라도 2월 말까지 학생의 신분은 유지됨.
 - ※ 유예의 경우에는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함.
 - ※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 개념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 (대구지방법원 판례 2017구합21229 판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1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함'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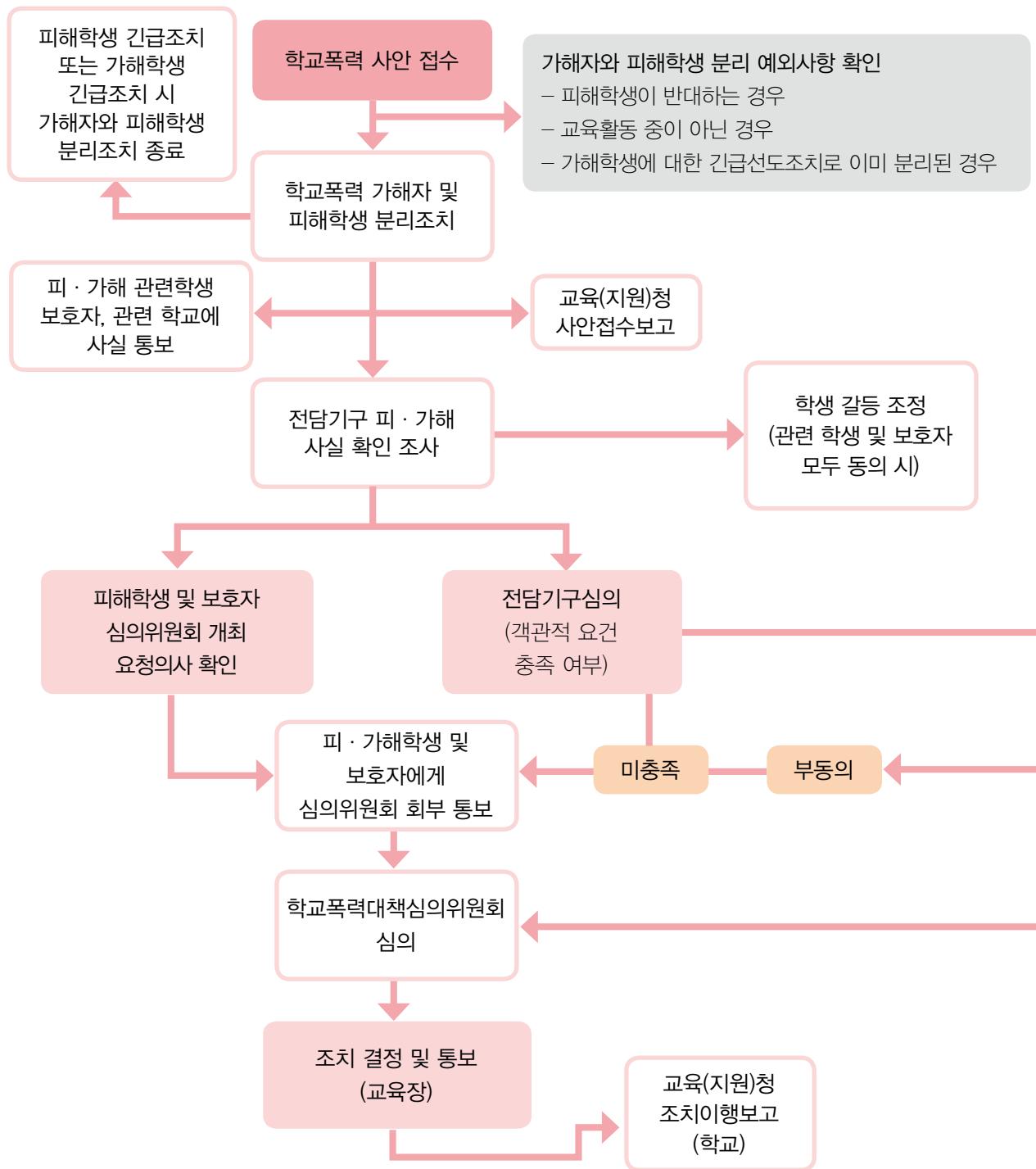


학교폭력 유형

유형	용어 정의 및 예시
상해	정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해상을 입힌 것 예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도구를 이용하여 골절상을 입힌 경우 오랜 시간 협박하여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폭행	정의 사람의 신체에 행하는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 예시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치는 행위 상대방을 향하여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 침뱉기, 물 뿌리기, 톡톡 치기, 목 조르기 등
감금	정의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 예시 문잠그기, 원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등
협박	정의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겁을 주는 말을 전달하는 행위 예시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밤길 조심해라, 신고하면 죽어, 수업 끝나고 보자 등
약취 · 유인	정의 (약취) 강제(폭행 ·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예시 무섭게 협박하면서 공원으로 같이 가거나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기 등 정의 (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예시 다른 친구가 불렀다고 속이면서 특정 장소로 데려가기 등
명예훼손 · 모욕	정의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예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진실인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 등 정의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이 아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예시 욕설하기, 패드립 등
공갈	정의 폭행 · 협박을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고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 예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금품, 옷, 문구류를 뺏기 등
강요 · 강제적 심부름	정의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예시 원치 않는 가방 들도록 하기, 강제로 동행하도록 하기 등 정의 (강제적 심부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시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심부름 강요 등
따돌림	정의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예시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빙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하는 행위 등
사이버폭력	정의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예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예시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 하는 행위 예시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성폭력	정의 -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부록]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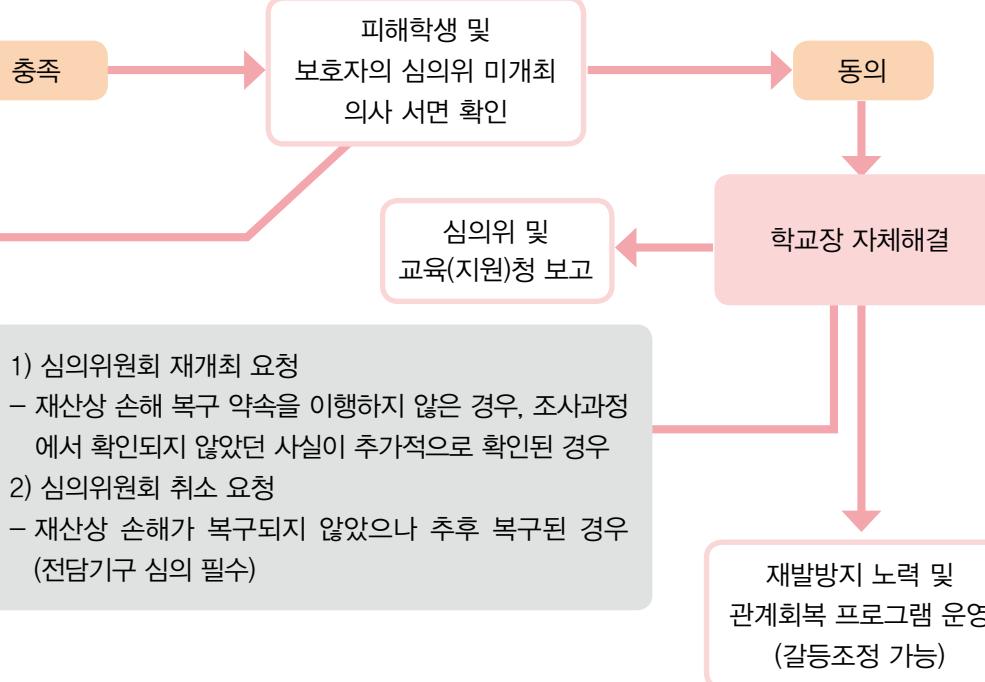
2장

사안처리 흐름도





사안처리
전 과정
관계회복
노력
(갈등조정)



3장

사전 예방 활동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관련 근거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법률 제15조).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한다(법률 제14조제5항). 다만,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3항).
-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제3호).

대상	횟수	방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제2호)•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제4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시행령 제17조제5호)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시행령 제17조제6호)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함.



'같이가치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개요

※ 자세한 안내는 1월 배부된 「같이가치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서」 참고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7조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학급별 연간 11차시 이상 편성·운영 권장
 - 정보공시(1차):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여 입력

※ 어울림 프로그램이란?

-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활동·목표 연계 개발
- 교사가 학교 및 학급 특성과 실정에 따라 역량, 문제유형, 차시 등을 선택하여 운영 가능
- 교과별, 교과간 교육과정 재구성 가능, 체험·활동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 실시

- 초·중·고등학교 공통: 어울림·사이버어울림 기본·심층 프로그램
- 중·고등학교 교과연계: 국어, 도덕, 사회, 영어, 체육, 기술·가정, 한문, 진로와 직업
-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 수업경감 방안: 안전교육 '폭력예방,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 연계, 인성교육 및 정보윤리교육 연계하여 실시(중복 시수 인정), 자유학기(년)제 주제선택활동 연계
- 운영 참고자료: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topbullying.re.kr>)
(아이디: Stopbullying032 비밀번호: dlscjs032!@)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 전념을 위한 책임교사 수업 경감 지원



학교폭력 유형별 · 추세 대응을 위한 '어울림 나눔주간' 운영

- 3월: 어울림 나눔주간1(집단따돌림 예방), 나는 학교폭력의 방어자입니다!
- 6월: 어울림 나눔주간2(사이버폭력 예방), 친구사랑 로그인, 사이버폭력 로그아웃!
- 9월: 어울림 나눔주간3(언어폭력 예방), 우리를 지키는 힘, 따뜻한 말 한마디
 - ※ 교육청 공문 참고하여 학교별 일정과 교육과정계획에 따라 자율 운영 가능
 - ※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 어깨동무활동 등 운영



함께 참여하는 '같이가치 with' 학교폭력 예방교육

- 같이가치 단풍길 걷자(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앱(app) 활용 캠페인)
 - 5월: 같이가치 꽃길 걷자 10월: 같이가치 단풍길 걷자, 학교폭력예방 건강 달리기
- 인천경찰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굿네이버스, 푸른나무재단 등 교육 운영
-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



어울림 프로그램 원격 연수 안내

- 어울림 ·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목록

순	제 목	개설처
1	(초,중등) 사이버어울림 기본(역량) 프로그램 이해 및 수업	
2	(초,중등)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이해 및 수업	
3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인천교육연수원
4	어울림 프로그램(초등 고학년, 저학년)	
5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국어, (통합)사회, 영어, 체육, 기술 · 가정)	
6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영어, 체육, 기술 · 가정)	중앙교육연수원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목록

- 초등학교 저학년

역량	차시	프로그램명	역량	차시	프로그램명
공감	1	엄마, 아빠! 저의 감정을 읽어주세요.	자기존중감	1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자기존중감
	2	딸아, 아들아! 네가 느끼는 그대로를 존중한단다.		2	자녀의 자기존중감 키우기
의사 소통	1	귀 기울여주세요	갈등해결	1	이해해주세요
	2	대화가 필요해		2	도와주세요
감정 조절	1	내 아이 감정조절 돋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1	설마 우리 아이가?
	2	감정조절 기술 가르치기 – 자기감정 인식과 자기표현력 기르기		2	우리 아이의 올곧은 성장을 위하여

● 초등학교 고학년

역량	차시	프로그램명	역량	차시	프로그램명
공감	1	아는 만큼 보인다	자기존중감	1	아이를 비추는 거울, 부모
	2	보는 만큼 느낀다		2	울퉁불퉁 아이들, 자기존중감 살려주기
의사 소통	1	내가 뿐린 말의 씨앗	갈등해결	1	내 아이의 갈등
	2	너는 어떻게 생각해?		2	갈등, 이렇게 해결해요
감정 조절	1	감정은 어떻게 생기나?	학교폭력	1	엄마, 아빠 요즘 초등학생들은?
	2	감정의 원리를 활용한 자의 감정조절 돋기		2	엄마는 아빠는 해결사



월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자료

※ 본 자료는 어울림 프로그램 현장지원단이 개발한 예시 자료이므로 학교와 학급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준비하기!(2~3월중 교육청 공문 확인)

-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학기별 1회 (연 2회 이상)
- 어울림 프로그램 편성(기본, 심층, 교과연계, 사이버, 자유학기)
-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신청(상, 하반기)
- 찾아가는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 학년, 신규교사) 신청
- 찾아가는 관계중심 생활교육(학생, 교사) 신청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전념을 위한 책임교사 수업 경감 신청(중, 고)
- 공모사업 혁신운영제(찾아가는 사이버폭력예방 공연 교육 등)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연극, 성폭력예방)신청
- 디지털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신청(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푸른코끼리) 참여학교 신청
-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찾아가는 학교교육 신청
-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 예방교육 신청
-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cyberbureau.police.go.kr
-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푸른나무재단, 비폭력 대화센터 등 교육 신청

월	주제	활동 예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자료 및 교육안내
3	나는 친구의 방어자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 서약서, 약속, 다짐 ●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수업 ● 어울림 나눔주간1 ● 학교폭력예방교육 아침 / 방송 (방송부 연계) ●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 ● 행복한 친구들 사진전 ● 내 소개 명함 만들어 교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세우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어울림 나눔주간1(인천시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급규칙 만들고 학교폭력 예방 다짐하기 2. 아침방송: 매월 같은 내용 반복(예시), 시종(방송반 협조) 활용 3. 친구의 “방어자 되기” 다짐하기 4. 학생자치회 주관 등 · 하교시간(자율) 학교폭력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운영 ● 공모사업 혁신운영제 자율선택제 신청(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공연 교육 학급중심학교폭력예방교육) ● 인천경찰청 청소년 경찰학교 신청 ● 굿네이버스 청소년 학교폭력예방교육,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4	나/너/ 우리는 소중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려 메시지 전하기 이벤트 ● 마법의 주문(듣고 싶은 말, 힘이 되는 말) 응모 이벤트 ●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수업 – 공감 및 자기존중감 역량 ● 미래의 주인공의 다짐 엽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칭찬 톡톡」 (한국정보화진흥원(www.아인세.kr)/사이버폭력예방교육 교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자나 SNS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의사소통 습관 형성 2. 모둠 친구들과 서로의 장점에 대해 고민 후 칭찬메시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받은 칭찬 문구 중 가장 기분 좋았던 내용 공유, 보호자 · 친구 등에게 칭찬메시지를 보내 긍정 정서 강화

월	주제	활동 예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자료 및 교육안내
5	학교폭력 고민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이가치 걷기 캠페인 참여 학교폭력실태조사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사이버 의사소통역량 수업 친구의 자격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좋은 친구 되는 법 흥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폭력 고민상담소」(한국정보화진흥원(www.아인세.kr)/사이버 폭력예방교육 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의 1인 방송국을 개설하여, PD, BJ, 디자이너, 댓글담당 등 각자의 역할을 정해 접수된 사이버폭력 사례 해결방안을 토론 후 발표, 행동 가치 토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같이가치 꽃길걷자」(인천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명 이상의 가족, 친구, 이웃, 학급이 함께 걸으며 학교폭력 예방 다짐하기 같이가치 어울림 어플 설치 후 걷기, 인천시교육청 블로그에 댓글 달기
6	친구사랑 로그인 사이버 폭력 로그아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울림 나눔주간2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 역량 수업, 인터넷 윤리 「학교폭력 외면하지 않겠습니다.」가족 다짐 영상 응모이벤트 「사이버폭력 로그아웃」 마을 홍보 거리 캠페인 사이버폭력피해학생 응원, 격려를 담은 N행시 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울림 나눔주간2,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인천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림장, 노트, 게시판 등에 「친구사랑 로그인! 사이버폭력 로그아웃!」스티커와 포스터를 붙이고 수시 확인 학생자치회 주관 등 · 학교시간(자율) 사이버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운영 활동 소감 나누기, 사이버폭력 없는 사이좋은 벗 되기 다짐 인증샷, 소감 등을 인천시교육청 블로그에 댓글 달기
7~8	내 손 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학 중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 배부 79데이 친구사랑 다짐 인증샷 친구에게 감사(사과) 편지 쓰기 친구사랑 노가비 이벤트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상의 길등 관리 좋은 친구 다짐 팔찌 만들어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예방 참여연극(법사랑위원회 인천지역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실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 참고 사전 신청 필요 방학중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예시) 인천교육청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Kwui4GhmlJs&t=27s (지금 우리 아이는)
9	우리를 지키는 힘! 따뜻한 말 한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울림 나눔주간3 따뜻한 말 한 마디 엽서 전달 친구를 지키는 캐릭터 공모전 학교경찰과 함께하는 새학기 캠페인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사이버의사 소통 역량 아름다운 댓글 달기 선물 홍보 표어/포스터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울림 나눔주간3(인천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듣고 싶은 말 활동 운영 학생자치회 주관 등 · 학교시간(자율) 언어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증샷, 소감 등을 인천시교육청 블로그에 댓글 달기 법무부 이로운 법(법사랑 사이버랜드) https://www.lawnorder.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가 되어주세요.(학생용 영상 활용) 법교육드라마-흔들리며 피는 꽃(학생용 영상 활용) 영상 보고 활동 소감 나누기 공모사업혁신운영제 자율선택제 사업 예산 신청

10	아름다운 우리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개선 캠페인 가장 아름다운 낱말 공모전 ‘친구’주제 가족 독후감 공모전 비폭력 지지선언 어울림 공감/사이버 공감 역량 수업 힘을 주는 말 뱃지/열쇠고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같이가치 단풍길걷자」(인천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명 이상의 가족, 친구, 이웃, 학급이 함께 걸으며 학교폭력 예방 다짐하기 같이가치 어울림 어플 설치 후 걷기, 인천시교육청 블로그에 댓글 달기 법무부 이로운 법(법사랑 사이버랜드) https://www.lawnorder.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체험 놀이터/언어순화 퀴즈 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왕 프로젝트-말의 힘,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감정을 다스려야 말을 다스린다. 인천교육청 언어폭력예방 캠페인 https://www.youtube.com/watch?v=P-8AaBITIgs&t=11s
11	1+1 친구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굣길 음악회(친구 노래) 소통의 이모티콘 만들기 어울림 갈등해결/사이버 상의 갈등 관리 및 문제해결 역량 수업 1111 존중의 날 UCC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좋은 디지털세상 https://www.digital7942.o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공감과 소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학교, 일상 등의 사례를 통해 공감 이해)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종류, 예방 법 및 대처방법 알기
12	모두가 하나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반 자랑대회 친구를 위한 소원 엽서전 어울림 자기존중감 사이버 자기존중감 역량 수업 학교폭력예방 뮤직비디오 만들기(인천교육청 학교 폭력예방송 활용) 수호천사 놀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래상담 https://www.peer.or.kr:448/default.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한 친구/대화하는 친구/도움 주는 친구 되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 상담을 통한 친구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익히기 공모사업 혁신운영제(어울림나눔학교)신청 인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송(소중한 친구 영상) https://youtu.be/TpFdb4zmUN0
1-2	새해 새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다짐 릴레이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자기조절/사이버 감정조절 역량수업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복주머니카드 주고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좋은 디지털세상 https://www.digital7942.o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정체성과 건강한 자기 표현 및 의사표현 이해하기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리터러시 이해하기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

학교폭력 인지 시 반드시 사안 접수 후 학교장에게 보고

2

아동·청소년 성범죄(성희롱 포함)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112, 117)에 즉시 신고

3

학교폭력 사실 인지 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공간 분리(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관련 학생들을 동시에 공간을 분리하여 조사)

4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 제공

5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공감과 신뢰감 확보하고, 성급한 화해 종용 또는 무리하게 예단 하지 않음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 사용

7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음

9

전담기구 및 사안처리 담당자는 학교폭력 관련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준수

10

학생 전출입 시 전출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리대장(가해 조치를 받은 학생 정보만)을 전입교에 송부

II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2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약 (학교장 자체해결 시)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경과일수(예시)
사건인지	사안인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인지자 학교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4항) 	1-1	
신고접수	신고 접수대장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접수 즉시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사안접수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2	
초기대응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기간 및 방법 결정(접수 24시간 이내) – 피해학생에게 분리 반대의사 서면 확인 가해자 공간 분리 –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음(시간 단위 분리 가능) – 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4	3일
	사안접수보고 및 사안내용 보호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 후 48시간 내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보고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 – 학교폭력에 관한 안내 보호자(학부모) 안내문 발송 통보 내용 등 기록 유지 관리 성폭력, 아동학대인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1-3 1-5	
긴급조치 (필요 시, 요청시)	피해 관련학생 긴급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긴급조치 가능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2-5 2-6	
	가해 관련학생 긴급선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4항)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2-5 2-7	13일 (추가 7일 가능)
사안조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기록 유지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요청 시 제출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5항) 	2-1 (2-2, 2-3) 2-4 2-8	
갈등조정	갈등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가해 양측 관련학생(보호자 포함)에게 갈등조정 참여 여부 의사 확인 – 양측 모두 동의 시 갈등조정 전문가(교내 또는 외부) 의뢰 	1-5 2-4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경과일수(예시)
전담기구 심의	자체 해결 요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료 일체	14일



충족여부	<p>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한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 ※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사안처리 요령” 참조</p>	
------	---	--



서면 확인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보고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 및 보호자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청에 보고 및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보(문서, 유선, SNS 등) 	4-1 3-1 3-2

※ 사안인지부터 학교장 자체해결까지 14일(7일 연장 가능) 이내 처리

※ 교육적 해결 단계 및 분쟁 조정

재발방지대책 노력 및 관계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회복프로그램(갈등조정) 운영 – 사안처리 중에도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가능 – 교내 교직원 또는 외부기관 전문가에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학생 개별 상담활동 및 생활교육 등 실시 	
분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 – 학생·학부모 서면으로 교육지원청 신청 가능 (단, 피·가해학생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야 절차가 개시됨) 	6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경과일수(예시)
사건인지	사안인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인지자 학교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4항) 	1-1	
신고접수	신고 접수대장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접수 즉시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사안접수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2	
초기대응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기간 및 방법 결정(접수 24시간 이내) – 피해학생에게 분리 반대의사 서면 확인 가해자 공간 분리 –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음(시간 단위 분리 가능) – 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4	3일
	사안접수보고 및 사안내용 보호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 후 48시간 내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보고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 – 학교폭력에 관한 안내 보호자(학부모) 안내문 발송 통보 내용 등 기록 유지 관리 성폭력, 아동학대인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1-3 1-5	
긴급조치 (필요 시)	피해 관련학생 긴급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긴급조치 가능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div>	2-5 2-6	
	가해 관련학생 긴급선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4항)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div>	2-5 2-7	13일 (추가 7일 가능)
사안조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기록 유지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요청 시 제출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5항) 	2-1 (2-2, 2-3) 2-4 2-8	
갈등조정	갈등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가해 양측 관련학생(보호자 포함)에게 갈등조정 참여 여부 의사 확인 – 양측 모두 동의 시 갈등조정 전문가(교내 또는 외부) 의뢰 	1-5 2-4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경과일수(예시)
전담기구 심의	자체 해결 요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복행위가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심의 위원회 개청 요청 의사 확인 	자료 일체 14일



충족여부	피해 관련학생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시 또는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 불충족 시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가 있을 경우 전담기구 심의)	
		▼
서면 확인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제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조치결과 학교 및 관련 학생 통보 ● 학교장 조치 이행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학생 조치 이행 협조 후 결과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보고 	4-2-1 ~ 4-2-10
		.
		5-1 5-2
	※ 피해학생의 희망하는 경우 피해학생 전출·전학 시 정보 제공	9-1, 9-2

※ 시안인지부터 학교장 자체해결까지 14일(7일 연장 가능) 이내 처리

※ 각급 학교별 보고 교육(지원)청 현황

학교 소재지	초·중·고등, 특수·각종학교 (온라인시스템 보고 시)	고등학교, 각종·특수학교 (유선 보고 시)
미추홀구, 동구, 중구, 옹진군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부평구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남동구, 연수구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계양구, 서구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1장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1

학교폭력 인지



초기 인지의 중요성

-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인지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및 방송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 학교폭력이 인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법률 제20조제4항), 학교장은 자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한다.



학교폭력 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방법	내용
학교폭력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학교·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교내 학교폭력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교폭력 신고함, 학교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 문자·이메일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피해·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예방교육 시)
교사의 관찰 및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상담
교내·외 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찰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 · 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 신고의무(법률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즉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 학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해야 함

● 교원의 보고의무(법률 제20조제4항)

- 교원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신고자 · 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법률 제21조제1항)

- 교원 등은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개인정보 등)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112, 117,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30쪽 참고).



학교폭력 사안접수 후 보고

- 전담기구 구성원은 학교폭력 사안 인지보고를 받은 즉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하고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를 포함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사안 인지 후 48시간 내에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학교폭력원스톱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한다.
-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에 보고한다(중대 · 민감 사안은 유선 보고 병행).
 - 각급 학교별 보고 교육(지원)청 현황

학교 소재지	초 · 중 · 고등, 특수 · 각종학교 (온라인시스템 보고 시)	고등학교, 각종 · 특수학교 (유선 보고 시)
미추홀구, 동구, 중구, 옹진군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부평구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남동구, 연수구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계양구, 서구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신고자에 대한 대처 방법

● 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

폭력 피해 징후를 보호자가 먼저 알아채고 학교로 알려왔을 때,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기

- 학교폭력 사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원한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처리 과정 중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준다.

-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또는 학교 구성원이 학교폭력 사안 자체를 세심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학교는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

- [신고자가 피해학생일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피해학생의 상태 파악과 신변보호

-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정서적 상태도 확인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 사실확인자로서의 역할

-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진술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된다.

- 상담자로서의 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많이 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주면 좋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 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 [신고자가 주변학생일 때]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신고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주어야 하는가?

- 신고 행동 칭찬과 협력관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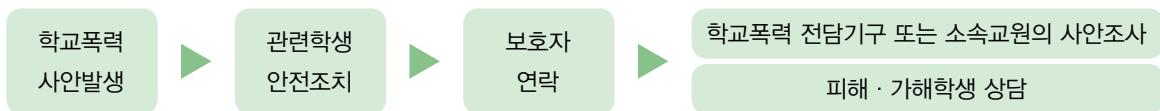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 다른 목격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지도하기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순서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참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 ▶ 학교 이외 장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관계 기관(경찰 등)과 협조할 때는 관련 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주고받아야 함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시행령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

● 주요 대상별 초기 대응 요령

조치 대상	주요 내용
피해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 안전 확보 후 심리적 안정을 유도한다. “아,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우선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자. 숨을 코로 들이 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풍선 불 듯이 천천히 끝까지 내쉬어 보는 거야. 가슴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내쉬면 돼. 선생님이랑 같이 5번만 해볼까?”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 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가해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킨다. “□□아, 잠깐 멈추자. 여기에서 나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 해보자.”

조치 대상	주요 내용
가해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한다. “□□아, 지금 너의 행동은 무엇보다 너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한다면 선생님에게 한번 이야기 해볼래?”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학생과 대화가 진행된 경우 가치 판단 없이 가해학생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후 조사과정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상황이 ~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이 일에 대해 알아보게 될텐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할게.” ☞ 가해학생과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 가해학생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후 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앞으로 이 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거야. 우선은 자리로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에는 협조 부탁할게.”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해당 시점에서 파악된 사안의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한다. “(피해학생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이 학교 교사 △△△입니다. 다른 아니라 오늘 ○○이 와 관련되는 일로 상의드릴 것이 있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파악된 사안 설명)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보호자의 학교 방문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 자녀와 만날 장소, 시간을 협의한다. “○○이가 (보호자)님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장소)로 (시간)까지 오시는 것이 가능하신지요?” 학교 측의 대응 계획을 정확히 안내하고 이후 조사과정에 협조를 부탁한다. “보통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우선 당사자들을 분리한 후, 사안의 경증을 판단하기 위해 사실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른들이 중심을 잘 잡고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교사로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자)님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귀가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피해학생 보호자)님, 많이 놀라고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누구보다 힘든 것은 ○○이 일거예요. 오늘 집에서 마음 잘 가라앉힐 수 있도록 다독여주세요.” (가해학생 보호자)님, 많이 놀라고 속상하실 텐데 □□이도 마음이 많이 복잡할거에요. 이후 조사나 회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목격학생/ 주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접근 후 목격학생/ 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한다.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우는 학생이 있는지 조용히 파악) 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 많이 놀란 것 같네. 보건실이나 상담실에 가서 다음 교시까지 쉬다가 오면 어떨까? 혹시 그래도 마음이 진정 안 되면 선생님한테 이야기 해줘.”

조치 대상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 한다.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킨다. “오늘 ○○이와 □□이 일로 놀라고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거야.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보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 하지만 누군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다들 기억하고 지켜줬으면 한다. 그리고 오늘 일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우리 반 친구들의 도움이 제일 필요해. 무엇보다 ○○이, □□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못된 소문 퍼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자.”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 처리 과정 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

● 신체폭력

◆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 보건교사 역할 :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여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 119(응급의료센터)란?

- 병원의 의료진 및 병상, 의료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안내함
- 구급차 출동, 시도 권역별 설치, 전문상담요원과 상담의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응급처치 지도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

- 보호자 연락: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 병원 이송 시 동승
- 사안조사에 협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 교감: 상황 파악, 지시
- 책임교사: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보건교사: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동승, 차량 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 전문상담교사: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또는 가해학생 대상 초기 상담

학교장 등 관리자

-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주력

●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 피해학생 조치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앤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도록 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 가해학생 조치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한다.
-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금품갈취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 피해학생 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한다.
-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금품갈취 금액 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 방임 · 빙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돋는다.

● 강요 · 강제적 심부름

- 강요 · 강제적 심부름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한다.

◆ 학생의 행동 감지

다음과 같은 행동 변화가 있을 경우 학생을 불러서 상담하고 보호자에게도 확인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
-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준다.

◆ 피해학생 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한다.
- 당분간 보호자가 등 · 하교 길에 동행한다.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 단순 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따돌림

-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 2차 피해 주의하기

-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에게' 혹은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 신고를 두려워하는 피해학생 돕기

-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학생을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조치를 반대하면 아래의 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된다.
 -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이 멈춘다.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 함께 만나지 않게 하기

- 피해 및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따돌린 학생 다수와 따돌림 받은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을 한다.

◆ 피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능력이 뒤쳐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67쪽 참고).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

● 사이버폭력

◆ 평소 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혐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앤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하도록 지도한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하도록 안내한다.

◆ 피해학생 조치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사이버폭력 발생 시, 증거 확보 후 피해학생·보호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관련 정보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155쪽 참고).

◆ 가해학생 조치

-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

◆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 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은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112, 117,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다.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나,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다.

◆ 피해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 피해학생 조치

-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 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한다.

● 아동학대사안

◆ 사안 처리

-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대응 요령

- 근무시간 외 교사가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며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여 필요 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 상대방의 신원 정보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알린다.
 - 사안이 긴급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성폭력 등의 경우에 몸을 씻지 말고 그대로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한다.
 - 방과 후 학교폭력 발생 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알린다. 신고 다음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교사는 피해 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린다.
 - 학교 소속 및 학교급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학생이 있는 학교의 전담기구 소속교사와 연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후 조치한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학교급) 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사안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안이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하다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협조를 요청한다.
 - 학원 등 외부 기관(단체, 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안 발생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2장

사안조사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구성권자 :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 이어야 한다.
※ 담임교사를 포함한 소속 교직원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학부모 구성원 구성 예시)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신설학교, 각종학교 등)는 학교장이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을 위촉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 사안접수(신고 및 인지된 사안)
 - ◆ 전담기구는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온라인시스템에 기록·관리한다.
 - ◆ 온라인시스템 기록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한다.
- 보호자 통보
 -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한다.
- 교육(지원)청 보고
 -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함
 - ◆ 성폭력 사안(성희롱 포함)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학교전담경찰관
- 학교폭력 사안조사
 -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 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 **사안조사 결과보고**
 -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장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 ◆ 입학년도별 가해학생 조치관리대장을 관리한다.
 - ◆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여부를 심의한다.

※ 다만, 2023. 2. 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인 경우에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를 심의한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 ◆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별도 시행문으로 안내함
- **갈등조정**
 - ◆ 피해 및 가해학생의 갈등조정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동의 시 갈등조정을 실시한다.

※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시스템(www.ice.or.kr)에 접속하여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학교장 자체해결된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및 관계회복 노력**
 - ◆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된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인성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무 조항).
 - ◆ 필요에 따라 학생 및 보호자 간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선택 조항).

필독

전담기구의 주요 역할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사실 확인**
 -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 및 가해학생의 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가벼운 사안이라도 피해 및 가해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 제출 여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여부, 지속성 여부,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 여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지 심의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4호 · 5호 · 6호 · 7호) 조치 사항 단서조항 해당 시 삭제 심의**
 - 재학 기간 동안(초등학교의 경우 3년)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 조치받은 날이 졸업일(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담기구는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판단하여 졸업 직전 삭제 여부를 심의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기재 유보 포함)통합관리대장 관리**
 - 경미한 조치(1호, 2호, 3호)의 기재 유보(이행 기간 내 조치 이행 시, 재학 동안 단 하나의 조치만을 받은 경우)를 관리한다.
 - 그 밖에 4호부터 9호까지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관리대장을 관리한다.

참고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주요 Q&A

Q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 ☞ 학부모 구성 추천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의할 필요 없음

Q2)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추천 절차 규정이 있는가?

- ☞ 법령에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

Q3)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은 어떻게 하는가?

- ☞ 법령에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
예)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구성 안내 시 신청동기, 이력 등을 기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천

※ 업무처리 순서(예시)

- ① 2000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내부결재)
- ② 학부모에게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전담기구 구성 안내
- ③ 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통보
- ④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후 학부모 추천
- ⑤ 학교장 위촉(내부결재, 위촉장 포함, 임기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Q4)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자녀의 졸업이나 전출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체 학부모 구성원이 결원된 상태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해도 되는가?

-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2항과 제14조제3항에 근거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는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이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인 요건을 충족한 전담기구이어야만 유효함. 따라서 전담기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여부를 심의하였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됨

Q5)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이 자체해결여부 심의에 참석한 경우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 ☞ 법령에는 여비와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 학교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비지급 모두 가능. 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편성 운영 지침”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7항)

Q6)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1명만 지정 가능한가?

-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3항에는 책임교사를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인원제한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명을 책임교사로 지정할 수 있음

TIP 실제로 A학교 등에서는 책임교사를 3명으로 지정하여 학년별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자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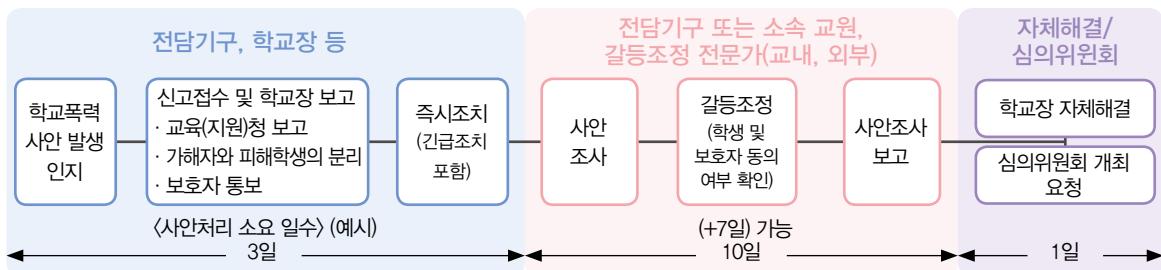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

- 조사 책임자 : 학교장
- 조사 담당자 :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



사안의 ‘발생-조사-보고’ 진행 과정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처리 내용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신고 접수 및 학교장·교육청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접수된 사안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기초 조사 전담기구 사안 협의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후 보고(내부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24시간 내) 및 담임교사 통보 신고 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 시 피해 및 가해학생 즉시 격리. 가해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성폭력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가능

사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

갈등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갈등조정의 목적 및 절차 안내(양측 동의를 얻어야 개시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가(교내·외)에게 갈등조정 신청 갈등조정 일정 및 장소 확인 후 학교 관계자 협조 갈등조정 전문가의 갈등조정 진행(사전모임, 본모임, 사후모임)
------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의사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4호의 요건을 전담기구에서 심의하여 서면으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하지 않음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참고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등 종결처리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님
-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종결처리 가능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안
 - 학생이 아닌 사람(성인, 학적이 없는 청소년), 신원불상자에 의한 학교폭력(성폭력 포함)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은 경우

3.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교원의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단순 채무관계, 절도, 놀이 등)
 - 피해자로 신고받은 학생이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등의 처리
- 전담기구에서 위 조건 1~3 해당여부를 협의하되,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을 받고 온라인시스템으로 종결 처리 보고함
 - 교육지원청에 종결처리 보고(양식 7-1, 7-2, 7-3)
 - 단,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피해 및 가해 사실 확인

필독 관련학생 사실확인 조사 시 유의 사항

-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에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 피해 관련학생과 가해 관련학생을 분리하여 조사
 - 가해 관련학생이 다수일 경우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통해 한꺼번에 불러서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증거자료는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온라인 상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이 있음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학생 상담 또는 조사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
 - CCTV 등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요청 가능
 -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와의 유선 전화 등 대화 내용은 문서(보고서)로 작성하여 누가 관리
-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고,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는 폐기하지 않는다.
 - 확인서는 학생 자필 작성이 원칙이나, 자필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 후 출력하여 학생과 작성자 모두 서명하여야 함
 - 학생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담당교원이 학생 확인서에 자필로 첨삭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이 새롭게 작성하도록 지도하되 최초 작성한 확인서는 폐기하지 않음
- 장애학생 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서로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유한다.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면담일지나 보고서는 직접적인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다. 다만, 사안관련 민원이나 쟁송 발생 시 학교 및 교사의 사안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면담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 ※ 경찰신고(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선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 목격학생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한다.
 -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안내
 -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학생확인서에 쓰도록 함
 -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위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



사안 조사 중점파악 요소

●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 유형	중점 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 · 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기타

- 교사(敎唆) 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 행사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 ·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참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1.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수사)

-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사안 보고

●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법률 제14조제5항)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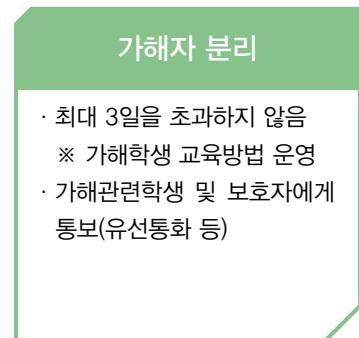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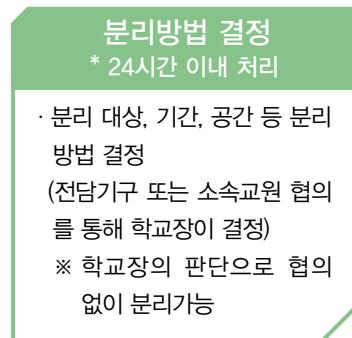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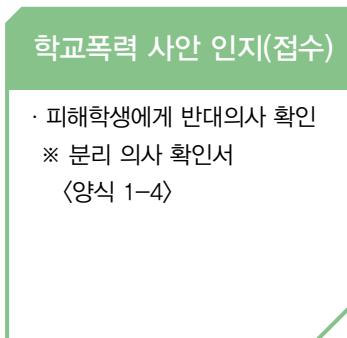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제1항).
 - 분리의 취지
 -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함.
 - ※ 관련학생 생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 ·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분리의 예외 사유

-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피해학생이 가해자(교사 포함)에 대한 분리를 반대하는 경우
- 가해자(교사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3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된다.
 - 가해자와의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참고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 · 학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학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참고

유의사항

- 학교는 가해자 분리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위(Wee)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 기간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 학급, 학년이 다를 경우에도 분리의사를 확인하되, 분리를 원하는 경우 수업은 각자 소속 학급에서 수강하되,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동일한 피해학생이 동일한 가해학생에 최초 분리 이후, 분리 이전 사안에 대해 연속적으로 신고할 경우, '분리'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최초 1회 분리만 실시함. 단, 최초 분리 이후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분리 실시할 수 있음.
- 피해학생 1명이 학급, 학년 전체를 신고한 경우, 학교 여건 및 환경, 피해학생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보호 가능함.
-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인 경우,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로 분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함. 단, 분리 결정 일수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적을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분리 시행함.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님을 안내

4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긴급보호조치 내용을 안내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 다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동 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학교장의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의 종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 Wee클래스, Wee센터, 심리상담센터 연계 가능
 - 일시 보호(2호) : 학교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실, 상담실, 가정과 연계하거나 학교,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쉼터, 가정형 Wee센터 등 보호기관과 연계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 제6호 조치 예시 : 등·하교 시 경찰동행 신변보호 요청, 의료기관 연계, 또래친구 동행,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사이버 폭력 피해 영상을 자료 삭제 요청 등 사안과 피해학생의 상태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 학교장이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양식 2-5, 2-6).
※ 긴급 보호조치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되었을 경우 긴급조치에 대한 취소는 불필요함.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동 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부과 가능 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5호+제6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의 종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 학교장의 우선 출석정지 요건(시행령 제21조)

-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21조제2항).

▶ 우선 출석정지 조치 시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청취 요령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출석정지의 요건(출석정지 조치의 불가피성), 기간 및 효력(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향후 처리절차(심의위원회의 추인 요청) 등을 설명하고 의견 청취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한 경우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양식 2-5, 2-7).

-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는다.
-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한 후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한 경우,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 기간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결석 기간을 출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내부 결재 시행)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참고

출석정지와 등교정지의 차이, 기간설정

- 출석정지: 수업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 등교정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 출석정지는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생이 해당 기간 동안 강제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없으며, 학생이 등교하는 경우 학습권을 보장하고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
- 출석정지의 기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학생의 징계(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년간 30일 이내 제한 기간이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 상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과 선도 목적의 조치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을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전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

- 관련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관계형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생이 긴장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내용이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한 후 전달할 수 있다.
-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상담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한다.
- 가해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종도입국·외국인학생과 탈북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피해학생 상담에 대한 주요 안내]

-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 피해 상황과 요구를 파악한다.
-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관리할 것을 인지시킨다.
- 사안처리 절차(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과정, 준비 사항(확인서, 증거자료 등),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준다.

● 피해학생 상담 절차(예시)

- 1단계: 면담에 앞서 학생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공감을 표현한다.

“○○아, 오늘은 이번 일과 관련하여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 지금 마음 상태는 좀 어떠니?”
“그래, 힘들었구나” 혹은 “그래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구나.” (학생의 답변을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로 따라 말함으로써 간결하게 공감을 표현)

- 2단계: 진술을 격려하고, 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한다.

어떤 판단이나 충고 없이 듣되 피해학생이 진술을 힘들어하는 경우, 1단계와 같이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공감을 표현한다.

“○○이를 돋기 위해 선생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셔. 다시 떠올리기 어렵겠지만, 이번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줄 수 있겠니?”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마음은 어떠니? (공감 표현)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심호흡) 이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너무 힘이 들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 3단계: 진술된 피해/가해 상황을 요약한다.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 해주어서 고마워. 선생님이 한번 요약해 볼 테니 맞게 되었는지 들어봐 줄래?”

(진술요약) 혹시 선생님이 요약한 내용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것이 있니?”

- 4단계: 해당 사안에 대한 교사로서의 입장을 전달한다.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관리할 것을 인지시켜 준다.

“오늘 ○○이와 이야기해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지네.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게!”

- 5단계: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방안을 탐색한다.

“(사안처리 절차 등 설명) ○○이가 회복하기 위해 □□이(가해학생)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까?”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

- 6단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면담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지금 느낌은 어떤지 간단히 소감을 나눠볼까?”

[가해학생 상담에 대한 주요 안내]

-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 사실 확인 과정에서 학생을 낙인찍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 피해로 결론이 나거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뒤바뀌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가해학생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가정적 요인 포함)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 가해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준다.
- 추후에 가해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재발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를 희망하는 경우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방법
 - 진심어린 사과란? 단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에게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 사과의 4단계와 원칙
 - 첫째, ‘미안합니다’라고 사과의 마음을 전함
 - 둘째,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
 - 셋째,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
 - 넷째, 사과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표현하고 보상함

● 가해 학생 학생 상담 절차(예시)

- 1단계: 면담에 앞서 학생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공감을 표현한다.

“□□아, 오늘은 이번 일과 관련하여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마련하게 되었어. 지금 마음 상태는 좀 어떠니?”

“그래, 힘들었구나” 혹은 “그래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구나.” (학생의 답변을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로 따라 말함으로써 간결하게 공감을 표현)

- 2단계: 진술을 격려하고, 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한다.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을 낙인찍지 않도록 유의하되, 폭력을 사용하게 된 배경(인지/정서/행동적 특징, 가정/친구 요인 등)을 충분히 탐색한다.

“이번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셔. 다시 떠올리기 어렵겠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

“□□이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했겠네. 혹시 이 방법(확인된 학교폭력) 말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었을까?”

“이번 일로 이 부모님(보호자)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어떠시니?”

“이를 아끼는 친구들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 3단계: 진술된 피해/가해 상황을 요약한다.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주어서 고마워. 선생님이 한번 요약해 볼 테니 맞게 되었는지 들어봐 줄래?”

(진술 요약) 혹시 선생님이 요약한 내용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것이 있니?”

● 4단계: 해당 사안에 대한 교사로서의 입장을 전달한다.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키고, 확인된 가해학생의 행동은 잘못된 것임을 부드럽게 전달한다.

“오늘 힘들고 긴 이야기 나눴는데 지금 기분은 어떠니?”

“○○이(피해학생)은 기분이 어땠을까? ○○이가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니?”

“□□이는 —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화가 난다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표현하면 주변 사람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선생님도 곁에서 도울게”

● 5단계: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방안을 탐색한다.

“(사안처리 절차 등 설명) ○○이가 회복하기 위해 □□이(가해학생)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해.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이가 한 행동이 ○○이(피해학생)에게 —한 어려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에게 사과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원한다면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

● 6단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면담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지금 느낌은 어떤지 간단히 소감을 나눠볼까?”

[목격학생 상담]

-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서에 작성하도록 한다.
-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 여부를 확인하여 위로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 한다.

● 목격학생 상담 절차(예시)

● 1단계: 비밀보장에 대해 안내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너도 알다시피 □□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보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 네가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비밀로 보장이 될 것이고, 네가 전달한 내용도 익명으로 사용하게 될 거야. 마음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주렴.”

● 2단계: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서에 작성하도록 한다.

● 3단계: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오늘 조사 내용 보니까 ○○이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 지금 마음은 어떠니?”

“○○이 애써준 보람이 있도록 선생님도 많이 노력할게. 그리고 혹시 많이 힘들고 불안하면 심리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연락해 둘게. 원한다면 선생님에게 알려주렴.”

보호자 상담 시 유의사항

- 한쪽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학교에서는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학부모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지만 진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조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힘드시더라도 학부모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되, 보호자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반응한다.
 - 이해와 공감의 예: “많이 속상하셨지요. 충분히 그러실만합니다.”
 - 동조의 예: “학부모님 말씀이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반박의 예: “학부모님. 그건 아니지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보호자의 사안의 내용이나 정황에 대해 문의할 때는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나 피해학생 보호 조치 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는 본인 자녀의 확인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을 알려준다.
-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문화학생(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음을 이해한다.
- 피해학생 학부모의 해당 사안과 관련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할지라도 처음에는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교사의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경우,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적 의견을 언급할 수 없음을 정중하게 전달한다.
※ (예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적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 측과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감정이 격앙되어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입회하에 만남을 진행한다.

●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의 절차(예시)

- 1단계: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내고, 면담의 목적을 알린다.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죠. ○○이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또한 걱정이 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의 사안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가 다시 학교생활을 잘 하려면 학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단계: 확인된 사실을 보호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번 ○○이의 일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이는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나요?”

“혹시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수정하고 싶으시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밖에 달리 알고 계신 점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3단계: 피해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 질문하고,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

“○○이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그렇군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 4단계: 사안처리 과정에 대해 안내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사안처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관련 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 5단계: 요구사항을 탐색하고, 학생 보호를 약속한다.

“○○이와 학부모님께서 피해 회복을 위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예: 상해 치료 및 치료비 청구, 화해, 사과 등)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 안전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보호하고, 가해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또 다른 피해나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의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 전문기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살펴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6단계: 충분한 의견 진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됨을 이해한다.
- 가해학생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 더 중대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생의 가해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논쟁하기보다는 접수하는 태도로 반응한다.
※ (예시) “예,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말씀하신 내용 잘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 피해 측을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문제가 된 행위와 무관한 사실까지 잘못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위한 것임을 전달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대우를 바라거나 비교육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정중하게 거절한다.
※ (예시) “학부모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모든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가능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드겠습니다.”

●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절차의 절차(예시)

- 1단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내고, 면담의 목적을 알린다.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죠. 저 역시 □□이가 걱정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고내용을 전달하고, 학교의 사안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가 다시 학교생활을 잘하려면 학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단계: 신고내용과 확인된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신고내용과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에 의하면 –라고 합니다. 혹시 학부모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가 ~한 행동을 한 것은 안타깝게도 사실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로 인해 상대 학생은 ~한 상태(신체적, 심리적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서술)입니다.”

“달리 알고 계신 점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3단계: 사안처리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사과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시킨다.

“그럼 이제 앞으로 사안처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관련 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라 □□이의 행동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상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상대 학생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가 상대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상대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에도 보탬이 되고요.”

- 4단계: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방안을 안내한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관련 학생들이 모두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5단계: 충분한 의견 진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III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한다.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 전담기구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학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된 경우(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한다.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 피해 관련학생에게 한하여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심의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학교장은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양식 4-4-1, 4-4-2 및 4-2-1~4-2-10 관련 서류 일체>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고 사안 종결처리할 수 있음(35쪽 참고)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미개최 요구 서면 확인 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요건에 충족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양식 3-1, 3-2, 4-1).
- 학교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 전담기구 심의 및 결정

-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후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첨부서류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시 서식 일체
 - (필수)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양식 4-1>
 - (필수)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양식 3-1>
 -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양식 3-2>

●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서면, 유선, 문자 등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 학교장 자체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상담 진행 및 인성 프로그램 운영 등).
- 필요 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담당 교사(교감 · 상담교사 등) 상담, 캠페인 활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필요 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 학교는 신고 ·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1) 사안조사, 2) 전담기구 심의,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4)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하면 자체해결 할 수 있다.

참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며,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을 따른다. 이 때,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하여 가해학생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 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양 기관 모두 학교장 자체해결로 판정이 날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며,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혹은 공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1

관계회복



관계회복의 개념

- 관계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회복의 목적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화해)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한다.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회복을 조력한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 하며 진행한다.



운영 대상 및 방법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측)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사전 개별면담 :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한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직접대면 및 소통) :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을 하도록 조력한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회복의 운영 주체

- 학교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사안에 대한 내용 및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학교의 사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교사에게 역할을 배정하되 아래의 역할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예시안〉

교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교감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
담임교사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책임교사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상담교사	● 심리 · 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가 아닙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화해를 종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소통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통해 관련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사안처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요?

- 학교는 학생들이 인간적, 사회적으로 성장하기에 안전한 장소여야 하며, 학교폭력의 발생은 이러한 안전감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한다.
- 그동안 학교폭력은 사안 처리를 위한 법령과 지침에 의존하여 다루어져 왔으며, 훼손된 안전감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관련 학생들의 안정적 적응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갈등 해결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관계회복은 이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분쟁조정의 개념

- 분쟁조정이란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한다.



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1항, 제6항, 제7항).
-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4항).
 -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사업, 02-598-1640).



분쟁조정의 대상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법률 제18조제3항)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당사자(피해 및 가해측)가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양식 6>
- 이를 위해서 해당 당사자들에게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분쟁조정의 기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법률 제18조제2항).



분쟁조정의 관할권

-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동일한 시 · 도교육청 관할 구역일 경우 : 해당 시 · 도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한다.
 - 관할구역이 다른 시 · 도교육청일 경우 :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및 통보

-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의 통보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합의서 작성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대상의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1항).
-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제2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고려될 수 있다.



IV

조치결정 및 이행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지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법률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의 권한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1항).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의견 제시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률 제13조제4항).
-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4항)



심의방식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대면 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안내함.
-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교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원 출석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성 사안과 사이버 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제5항).



심의기간

-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함.
 -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심의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청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하면 자체해결 할 수 있다.
 - ※ 학교 측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된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취소 불가
 -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 표명 →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양식4-3)'를 첨부하여 온라인시스템 문서로 보고 → 교육지원청은 문서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후에 학교는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심의위원회 소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제출서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등

심의위원회 준비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교원의 출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서 발송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온라인시스템 문서로 발송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확인하고 문서 요청 자료 발송 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

첨부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관련 서식 일체
 -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양식 4-2〉
 -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표지)〈양식 4-2-1〉
 -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제출 내용 목차〈양식 4-2-2〉
 -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양식 4-2-3〉
 -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양식 4-2-4〉
 - (필수)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양식 4-2-5〉
 - (필수) 학생 확인서〈양식 4-2-6〉, 해당 시 〈양식 2-2, 2-3〉
 - (필수) 보호자 의견서〈양식 2-7〉
 - (해당 시 필수)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 및 통보〈양식 4-2-8, 4-2-9〉
 - (확보시 필수) 증거자료(CCTV영상, SNS 및 문자 메시지 등)〈양식 4-2-10〉
 - (해당 시 필수) 학생선수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선수등록증명서 등)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

-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 (영상)통화,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다.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피해 및 가해측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 관련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가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

-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를 피해 및 가해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장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은 조치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 이때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법률 제19조제1항).

● 학교장의 조치이행 결과 보고

- 학교장은 가해측이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법률 제19조제3항).
〈양식5-1〉
※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보고하되,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를 통보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미이행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과 사유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 안내할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92쪽 참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 학교폭력 피해 관련 지원 프로그램
 - 학교폭력 화해 분쟁 조정 기관에 대한 정보



피해학생 보호조치

-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2호 :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할 수 있다.
- 제4호 :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5호 : 기준 전학권고 조치는 삭제됨
-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 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참고

피해학생의 교육환경 변경

-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시행령 제73조제6항,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배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때 배정된 학교 장은 전학을 거부할 수 없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고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제16조제6항).

• 지원 범위(시행령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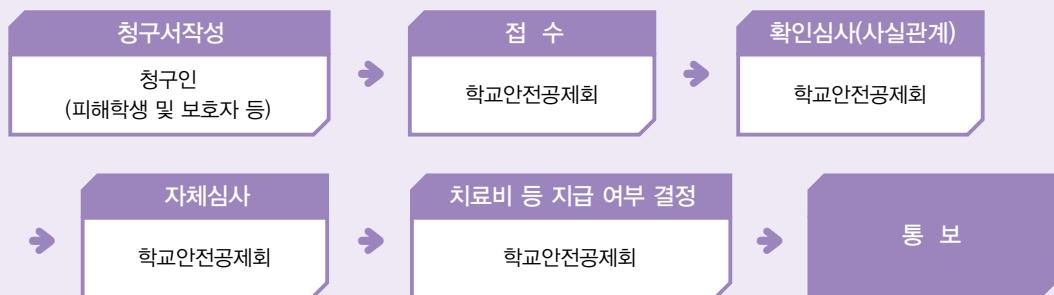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증점 파악 요소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 받는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참고

피해학생 치료비 청구 방법

▶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청구 방법

-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



▶ 학교폭력 피해지원비 청구 관련 문의기관

-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 인터넷주소 : <http://incheon.ssif.or.kr>
 - 전화번호 : 032-437-7900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8번길 23(주안동, 유성빌딩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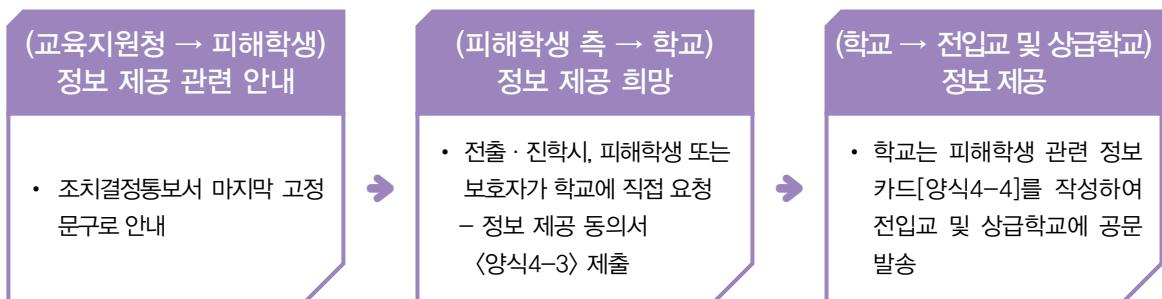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

- 출석일수 산입 : 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4항).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필요).
- 이외에도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8).
- 불이익 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16조제5항),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출 · 진학 시 피해학생 정보 제공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출 · 진학 시,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출교 및 상급학교에 제공한다.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2제1항). 따라서 장애관련 비하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 · 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사안처리 과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장애학생이 피 · 가해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 또는 장애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범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 · 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사항

- 1)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1)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다문화 · 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다문화학생(중도입국 · 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중도입국 · 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은 문화적 · 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중도입국 · 외국인학생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 · 외국인학생 등), 탈북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켜 다문화학생(중도입국 · 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 · 외국인학생 등) 또는 탈북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학생 교육 · 선도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이행 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의위원회가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조치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법률 제17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조치 및 제17조제3항의 부가조치는 시간 단위로 결정한다.
 -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8항).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확정 후 이행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한다. 단, 학교의 장이 관련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

접촉 등 금지의 범위

- 시간적 범위: 심의위원회에서 제2호 '접촉 등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급의 졸업 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가 유효하다.
- '접촉'의 범위: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참고

학교에서의 봉사

-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 · 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학교 행사 도우미,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지도교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

사회봉사

-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참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 가해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 제6호 :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 해야 함
※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제7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 제8호 :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학 처분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조치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4항).

● 제9호 : 퇴학처분

-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퇴학 처분 시 학교장의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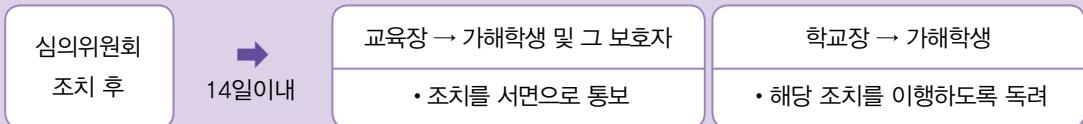
-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시행령 제23조제2항)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11항).
※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제7항).

▶ 조치시일 및 이수 기간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조치 미이행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 (제2호 조치 위반의 경우) 학교장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사안처리
- (제3호~제9호 조치 미이행의 경우) 교육장(심의위원회)은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해당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참고

교育장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7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퇴학처분



가해학생 특별교육

-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된다.
 - 법률 제1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 제3항). 이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여부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3항)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제9항).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률 제23조, 시행령 제35조).

▶ 조치시일 및 이수 기간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심의위원회 조치 후

→
14일
이내

교육장 → 보호자

-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

교장 → 보호자

-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이수
하도록 시간 및 장소 안내

▶ 조치 미이수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과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서면으로 안내한다.

보호자 조치 불응/미이수

→
조치 후
3개월
다음날

교장 → 시·도교육감

- 해당 보호자 명단 통보

시·도교육감 → 보호자

- 1개월 이내 참여 서면안내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시 · 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시 · 도교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 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 · 도교육감에게 제출
 - 시 · 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함
-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 보호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 · 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60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제기 가능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참고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 운영 원칙

- 기관 특성 · 폭력사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가해 유형별 사례 관리 및 추수 관리
※ Wee센터 또는 Wee클래스에서 원적교와 협력하여 상담의 효과성 제고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 대면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 · 도교육청이 인정하는 범위(보호자 타 시 · 도 거주 등)에서 온라인 원격연수 방식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능
- 자녀의 심리상태 이해 등을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의 개인상담시 학생과 함께 또는 별도 실시 가능
- 개인 상담 실시 : 특별교육에 일정 시간 부과 및 필요 시 추가 가능
※ Wee센터 또는 Wee클래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 교육 내용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 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 · 학부모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시간 부과 기준

교육 대상 처분	이수시간	교육 운영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및 개인상담 이수	학부모 · 학생 공동교육 가능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 이상		

• 특별교육 기관 선정

- 교육청은 전국 시 · 도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 · 평생교육진흥원), 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 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푸른 나무재단, 평화여성회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선정하고 학부모에게 안내

관련 조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내용 등. 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의견 등.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인적·학적사항)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사항)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구체적인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한다.
-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는다.
- 조치결정 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한다.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고 조치사항만 수정함(유예, 자퇴 등 학업중단자 포함)
- 학적이 정지된 자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전학년의 경우 정정대장을 통해 기록한다. 학적이 정지된 자가 복교할 당시 중복기간 동안 해당 학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조치 사항이 입력된 내용은 유지한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양식5-2)을 관리한다. 해당 학생이 학적 변동 시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은 전입한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이에, 학적 변동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 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 기재 유보된 조치사항과 새롭게 추가된 조치 사항을 모두 입력할 때,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 모든 조치 사항을 추가 조치된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여 기재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한다.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함.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학적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 전출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기재유보된 사항(관리대장의 해당 학생 조치 내용)을 통보한다.

관련 조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
-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2. 9. 23. >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11.]

부칙 <교육부령 제281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 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 제1호~제3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가 원칙이나,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심의하여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제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한다.

※ 2023.2.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삭제 시기 및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 2023.2.28.까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 삭제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2023.3.1.부터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표와 같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시기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과 동시에(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 재발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삭제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출결사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9호(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대상 아님

※ 2023.2.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삭제 시기 및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시 유의사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7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함.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함.

※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되, 기존 졸업생은 심의 대상이 아님

심의 대상자(4호 · 5호 · 6호 · 7호)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7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참고 제출자료: 담임교사의견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확인 서류, 신청서 등

- ※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통합 관리(기재 유보 포함)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 ※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통합 관리(기재 유보 포함) 대장'을 입학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함.

● [제8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8호는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한다.

※ 2023.2.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삭제 시기 및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 전담기구 심의 절차

단계	처리 내용	주관
심의대상 선정	<p>전담기구는 졸업 직전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여부 심의를 위한 대상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4·5·6·7호)이 기재된 모든 졸업예정 학생(학부모)에게 삭제대상임을 안내(서면 통보, <양식 8-1>) 한 후, 기재 삭제를 신청한 학생 중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학교장에게 보고) 	전담기구 (담임 협조)



심의 자료 수집	<p>전담기구는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심의를 위한 근거자료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자료 및 참고자료(선택) : 후술 	전담기구 (담임 협조)
-------------	---	-----------------



심의 보고서 작성	<p>전담기구는 조사 및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의보고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심의보고서 작성 	전담기구
--------------	---	------



심의	전담기구 심의	전담기구
----	---------	------



보고 및 통보	전담기구는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	전담기구
---------	---	------

● 심의 방법

– (심의 시기) 매 학년말(12월~2월)

– (심의 자료)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심의<양식8-3>

* 학급담임교사(현 담임) 의견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확인 서류 및 공문, 가해학생의 신청서<양식 8-2>, 기타 참고자료(기타교사 및 상담인력 의견서(전 담임, 생활부장, 교과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외부전문가(정신과 의사 등) 의견서 및 입증자료, 피해학생 의견서 및 입증자료, 심층상담카드,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등)

※ 가해학생 신청서를 제외한 의견서는 전담기구에서 직접 수집함(가해학생을 거치지 않고 전담기구로 제출)

※ 의견서에는 객관적 사례 및 구체적 변화 내용을 기재할 것

– (심의·의결 방법) (예시)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 (기타) 필요 시 전담기구에 학급담임교사, 관련교사, 가·피해학생 또는 학부모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심의 기준(예시)

항목	구분	관점 및 기준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는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학교생활의 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실향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학교 또는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키는가? ○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는가? ○ 교우관계가 원만한가?
피해학생과의 관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는 회복되었는가?
기타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이후 특별한 선행이나 유공사례가 있는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 사안 성격에 따라 심의 기준은 조정할 수 있음

참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역할 분담 및 절차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관리, 학년말에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 통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및 관리(대상자 확인, 담당자 지정, 결과 확인 등)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학년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명단 학교장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 ①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1·2·3호 조치를 받은 출업예정자 명단
 -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4·5·6·7호 조치를 받은 출업직전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출업예정자 명단
 - ③ 출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 명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통보받은 삭제 대상 명단(출업 예정자, 출업자) 확인 및 확정
 - ※ 출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기재된 경우(정정대장 작성 불필요)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확인 및 확정 절차를 거침
-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담당자 지정
 - ※ 삭제 담당자는 당해 학교 업무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예시, 출업예정자는 학급담임교사, 출업자는 업무담당자 등)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여부를 최종확인하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내부결재 및 담당자 공람)

삭제 담당자

- 담당자는 나이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처리
- 담당자는 삭제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고*
 - *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 전과 정정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음



행정심판의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행정심판의 대상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된다.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교육장은 참가할 수 있는 피해학생에게 청구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집행정지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통보받기 이전까지 교육장이 내린 조치를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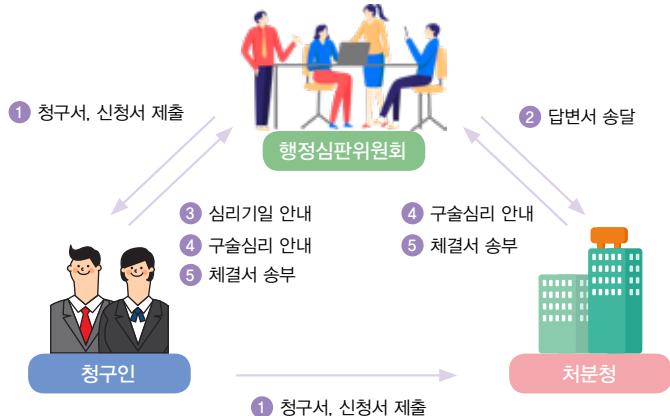


행정심판의 절차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 심판의 절차 ②]

2) 2018.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참조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개념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 집행정지 결정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처리 절차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진다.

●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은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 민사절차에서는 형사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제도가 없다. 따라서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및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1/5로 비교적 저렴하게 든다.
- 각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 민사책임의 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 ·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지도 ·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 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이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주요 내용

● 기본 원칙

- 감염증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 이용 및 집합 제한 등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중대본)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조치
 - *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교육부),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육부 등)
- 사안 조사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안처리 절차 진행 시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
- 감염증 예방 및 대응을 최우선으로 조치하되,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기본적 진술 기회 및 보호받을 권리 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세부 방안

【사안조사 단계】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입원 치료 또는 격리 등으로 인해 진술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를 유예하고, 회복상태를 고려하여 사안 조사 실시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 표현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영상,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사안조사 실시
 - 다양한 방법(전자우편, 유선전화 등)*을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하되, 방역기본 지침을 강구하여 대면 조사도 가능

* 관련 학생이 자술한 파일 또는 진술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전자우편(SNS포함)으로 수신하고, 서명이 누락된 경우 학생 등교 시 서명을 받음. 유선전화를 이용할 경우 학교폭력책임교사 또는 담당교사가 관련 학생과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 진술 보충서(양식 2-3)를 작성하고 작성된 보충서를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SNS를 통해 회신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학생이 등교 시 확인 서명을 받음

※ 애플리케이션(네이버오피스, e알리미, 학부모알림장 등)을 활용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

【사안 심의 단계】

- (심의위원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심의회를 정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변경을 검토
 - 회의실 내 방역 강화 조치*를 우선 시행
 - * 마스크 상시 착용, 방역 물품 구비, 개인 간 거리 이격 또는 칸막이 설치, 창문 수시 개방 등
 - 상황 발생 시 회의 공간과 참석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장 승인 후 대면회의 방식을 화상회의 등으로 변경 운영
 - ※ 예시 :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심의위원과 관련 학생, 참고인 등을 분리 배치하여 영상회의 접속 추진 등
 - ※ 피·가해학생 측의 진술이 위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음성·영상 등 정상적 작동 장치 사전 준비
 - ※ 공동심의위원회는 주관하는 교육지원청에서 회의 방식 등 운영 방법 결정
- 피·가해학생측이 확진 또는 의심증상으로 심의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서면, 영상 등)을 강구하고,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치결정 유보 등 대응
- 회의에 참석 예정인 심의위원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체 소위원회 운영 등의 방안 마련

【조치이행 단계】

- 교내·외 이용 시설 등의 밀집도 및 밀접 접촉 최소화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치이행 추진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관련 학생의 조치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치료 종료' 이후에 조치를 이행
※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학교는 내부결재 후 교육지원청에 조치이행 기간 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지원청은 승인
- 학교장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 외부 위탁 기관에서 이행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에 대해 안전 확보 여부 사전 검토 실시
- 단, 학교장은 조치이행을 위한 외부 기관 참여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사회봉사(가해학생 조치 4호) 및 특별교육(가해학생 조치 5호 및 부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학교장은 운영 변경 시에도 조치의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교내봉사와 구별되는 방안을 강구(예시, 교내봉사와 차별화된 봉사활동 마련, 별도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초빙 등)하고, 내실있는 특별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피·가해학생 측에 충분한 설명 실시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행 방법(예시)

- 1호 조치: 피·가해학생이 동일 학교 소속일 경우, 가해학생의 사과서면을 촬영한 이미지를 피해학생에게 전자우편 또는 SNS로 전달, 피가해학생이 동일 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 가해학생의 소속교에서 가해학생의 사과서면을 공문으로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발송하여 피해학생에게 전달
- 2호 조치: 종전과 동일하게 조치 이행
- 3호 조치
 - 대면 봉사활동: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자율 등교 후 방역조치 후 실시
 - 비대면 봉사활동: 세부계획 학교장 사전 승인 후(내부결재) 가능
(예시: 면마스크 10개 만들기, 온라인 캠페인 10회 참여하기, 캠페인 선물 인증샷 보내기, 선풀달기 등 실시 후 직접 활동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4호 조치: 3호 조치 이행 방법에 준하여 실시
 - 대면 봉사활동: 사회복지자원봉사(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나눔청소년봉사단(1365)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여 참여
 - 비대면 봉사활동: 세부계획 학교장 사전 승인 후(내부결재) 가능
(예시: 면마스크 20개 만들기, 온라인 캠페인 20회 참여하기, 캠페인 선물 인증샷 보내기, 선풀달기 등 실시 후 직접 활동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5호 조치
 - 대면 특별교육: 특별교육이수 인정 기관 일정 확인 후 실시
 - 비대면 특별교육: 특별교육이수 인정 기관 화상 또는 유선 상담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가적 특별교육은 원격 이수(학부모온누리) 실시 가능
- 6호 조치
 - 등교수업 시: 종전대로 출석정지 조치 이행
 - 원격수업 단방향(수업컨텐츠 제공) 수업 시: 출석정지 조치를 이행하고 가해학생의 수업 참여 가능
 - 원격수업 쌍방향 수업 시: 출석정지 조치를 이행하고, 가해학생의 쌍방향 수업 참여 배제, 단 가해학생에게 수업자료 제공
- ※ 출석정지 조치는 가해학생의 등교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정지 조치 기간에는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의 수업공간(원격수업 포함)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임
- 7, 8, 9호 조치: 종전과 동일하게 조치 이행

● 협조 사항

- 사안처리와 관련해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 변동에 대해 피·가해학생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안내

참고 3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록 및 이행



기본 원칙

- (이전 학교에서 기록 · 이행) 졸업학년도 말일까지 학교에 신고 · 접수된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학교에서 가해학생 학생부 조치 기록과 조치이행 실시
※ 심의위원회에서는 실효성있는 가해학생 조치이행이 가능하도록 이전학교의 졸업시기, 상급학교 진학 정보 등을 참고하여 조치를 결정
- (상급학교에서 이행 지속) 이전학교에서 조치이행에 필요한 잔여 기간 부족, 교육활동 종료 등의 조치이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 학교장이 상급학교장에게 가해학생 조치사항 이행 협조 요청



세부 운영 기준

- (학생부 기록) 이전학교에서 신고 · 접수된 사안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시기와 관계없이 이전학교 학생부 해당란에 조치결과를 기록
※ 졸업예정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 가해학생 조치결정이 통보되었을 경우, 이전학교에서는 학생부 정정 절차 (당해 학년도 학생부 자료일 경우 수정 절차)를 통해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 · 삭제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생부 정정 절차 〉

- 정정 내용: 이전학교에서 신고 ·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이 상급학교 진학 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 사항*
* 가해학생 조치결정(제1호~제8호)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 및 삭제할 가해학생 조치사항
- 정정 주관: 이전학교 *가해학생 졸업학교
- 정정 절차: 기록 또는 기록 후 삭제
 - 조치사항 기록 반영을 위한 학생부 정정 절차에 따라 기록
 - 학생부 정정 절차를 거쳐 기록과 함께 삭제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및 삭제 방법
 - 졸업 이후 처분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3호)은 학생부에 기록 후 삭제(단, 재학 중 조치 받은 적이 없었을 경우, 조치이행 기간 내 조치이행 시 정정 절차 없음)
 - 졸업 이후 처분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인하여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재 유보되었던 제1호~3호 조치와 전담기구 심의로 삭제된 조치 제4호~제7호은 정정을 통해 재입력(삭제 취소 처리)
 - 제1호~3호는 기록 및 삭제, 제4호~제7호는 재입력

※ 2023.2.28. 이전 접수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 조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 정정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따른다.

- (조치이행) 이전 학교장은 조치이행 실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상급학교장에게 조치사항 이행 협조 요청

〈 참고 : 조치이행 담당 학교급 변경 · 통보 절차 예시 〉

- 이전 학교장은 조치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 원료가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상급학교장에게 조치이행 협조 요청



- 상급학교장은 가해학생 조치 이행 협조 후 이전 학교장에게 조치이행 결과 통보



- 이전 학교장은 조치이행 결과를 온라인시스템으로 관할 교육장에게 보고

- 기간이 포함된 가해학생 조치사항(2호~6호)이 이전 학교에서 졸업학년도 말일까지 통보되었을 때는 이행 가능 기간 확보 여부를 토대로 이행 담당 학교급을 판단 및 변경
※ 이전 학교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일부라도 이행하고 이행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상급학교에서 이행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상급학교에서는 기록하지 않음
※ 학년말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용함
(예시: 2학년 학생이 2월 말 이전에 가해학생 6호(5일)를 받았으나 종업으로 출석일수가 없을 경우 →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2학년 학생부 출결 특기사항에 조치사항 기재, 조치미이행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신학년도 3학년 진급 이후 6호(5일)조치 이행(미인정 결석 처리)하되, 학생부 미기재)
 - 그 외 가해학생 조치(7호~8호)를 가해학생 조치 통보를 받은 학교에서 모두 이행
※ 교육과정이 운영이 종료된 시점(졸업식 이후 등)에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7호)와 전학(8호)이 결정 · 통보된 경우라도 이전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전 강제 이행
-
-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피 ·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도록 피 ·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관련 참고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반드시 제공



부록



- 1. 피해학생 보호 · 지원**
-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양식 목록 및 세부사항**
- 3.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 4.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 5.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 6.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역	연번	기관명	주 소	연락처	지원유형			
					상담 지원	일시보호 긴급	기숙 기숙	병원
전국	1	해맑음센터	대전시 유성구 대금로 77	070-7119-4119	O	-	O	-
	2	인천시Wee센터 (사랑과희망의피그말리온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학로 169번길 73 2층	032-550-1705	O	-	-	-
	3	남부교육지원청 제1Wee센터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1번길 45 별관 1층	032-770-0128	O	-	-	-
	4	북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인천시 부평구 주부토로 292 부평북초등학교 서관 2층	032-510-5427	O	-	-	-
	5	동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31 연수중학교 신관 1층	032-455-4610	O	-	-	-
인천	6	서부교육지원청 제1ee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948번길 13 인천양촌중학교 5층	032-555-7179	O	-	-	-
	7	강화지원청 Wee센터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0번길 16 미래교육지원센터	032-930-7820	O	-	-	-
	8	초등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O	-	O	-
	9	중 · 고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O	-	O	-
	10	중 · 고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O	-	O	-
	11	인천시 학교안전공제회	인천시 미추홀구 구월로 8번길 23, 3층(유성빌딩)	032-437-7900	O	-	-	-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 등 전문기관 세부 현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 → 부서별페이지 학교생활교육과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부록2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양식 목록 및 세부사항

구분	번호	작성여부	양식명	세부사항
초기 대응	1-1	선택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사안을 인지한 교사가 작성
	1-2	시스템 품 필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학교장결재(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3	시스템 품 필수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1-4	해당 시 필수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피해학생에게 서면 확인 후 온라인시스템사안 접수 보고 시 첨부
	1-5	선택	학교폭력에 관한 보호자(학부모) 발송용 안내문	피·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시 활용
사안 조사 및 긴급 조치	2-1	필수	학생 확인서	피·가해 관련학생, 목격학생 등 작성
	2-2	선택	면담 진술서	학생 의사표현능력에 따라 활용가능
	2-3	선택	면담 진술 보충서	
	2-4	필수	보호자 의견서	보호자가 작성하여 제출
	2-5	시스템 품 필수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 및 긴급조치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2-6	해당 시 필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시스템 사안 긴급조치 보고 시 첨부 승인 이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2-7	해당 시 필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시스템사안 긴급조치 보고 시 첨부 승인 이후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2-8	필수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전담기구 사안조사 최종보고
전담 기구 심의	3-1	필수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 결정근거 및 결과 포함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3-2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자체해결 보고	4-1	시스템 품 필수	학교폭력 사안 자체해결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4-2	시스템 품 필수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4-2-1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 요청 관련 자료(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첨부 표지를 포함하여 작성된 자료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4-2-2	필수	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4-2-3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4-2-4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구분	번호	작성여부	양식명	세부사항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4-2-5	필수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첨부 표지를 포함하여 작성된 자료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p>※ 다수 학교 관련 사안의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목록 및 서식은 [4-5-1~9] 첨조</p>
	4-2-6	필수	학생 확인서	
	4-2-7	필수	보호자 의견서	
	4-2-8	해당 시 필수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4-2-9	해당 시 필수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4-2-10	해당 시 필수	증거 자료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취소	4-3	시스템 품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개최 이전에 피해 관련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원하는 경우
	4-3-2	해당 시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심의 위원회 개최 재요청	4-4-1	시스템 품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자체해결되었으나 약속된 피해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피해사실 확인 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4-4-2	해당 시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 시 첨부
조치 이행	5-1	시스템 품 필수	피 · 가해학생 조치이행 보고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5-2	시스템 품 필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통합 관리(기재 유보 포함) 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결재(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심의위원회 조치통보서 수령 후 조치이행 여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여부 등을 기록 <p>※ 해당 학생 전출 시 조건부 기재유보 내역 송부 필요</p>
교육적 해결	6	해당 시 필수	분쟁조정 신청서	학생 · 학부모 ⇒ 교육지원청(문서신청) 피 · 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 양측 모두의 신청(동의)가 있어야 절차가 개시됨을 사전안내
사안 종결 시*	7-1	시스템 품 필수	사안 종결처리 보고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7-2	해당 시 필수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7-3	해당 시 필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p>* “학교폭력 아님” 또는 아동학대(성관련 포함) 사안의 경우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경우</p>				

※ 기타 양식

구분	번호	작성여부	양식명	세부사항
조치사항 삭제 통보 및 신청	8-1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통보서	<p>조치사항 4,5,6,7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출입 직전 전담 기구의 삭제 심의를 받기 위한 통보와 해당 학생의 삭제 신청</p> <p>*심의조건: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2월말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재학 중 학교폭력 사안으로 2회 이상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p>
	8-2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8-3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보고서	
피해학생 정보제공	9-1	선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p>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 전출교 및 진학교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p>
	9-2	선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양식1-1 선택-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등 최초 사안인지 교사 작성용)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합니다.

1. 인지일시 장소 및 인지경위

- 예시 1) 20○○. 3. 5. 13:00경 000학교 Wee 클래스 상담실에서 000학생(2학년 3반) 상담 중 인지
- 예시 2) 20○○. 4. 7. 14:00경 000학교 1학년 교무실에서 000학생(2학년 3반) 보호자와의 전화 통화로 인지
- 예시 3) 20○○. 4. 10. 15:00경 남동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000 면담 중 인지

2. 인지내용

예시1)

- 20○○. 3. 5. 17:00경 학교 앞 00 PC방에서 A, B, C 등이 모여 게임 중 옆에서 게임하던 D가 A에게 담배를 달라고 함.
- A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자 D는 “이 새끼들 겁도 없네”라고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며 A, B, C의 주머니를 뒤져 A로부터 5,000원, B로부터 3,000원, C로부터 2,000원 도합 1만원을 빼앗아 감
- 그 사실을 PC방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이 보고 말리자 D는 그대로 갔으며 그 상황은 PC방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안다고 함.

예시2)

- 20○○. 4. 7. 점심시간에 교내 식당에서 000학교 3학년 A가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B가 식판으로 A를 때려 머리에 상처를 입힘
- 교내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구월동 00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임
- 당시 식당에 있던 000, 000, 000 등 다수 학생이 그 상황을 보았고 특히, 000, 000등은 보건실과 병원까지 동행했으나 B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함

20 . . .

보고자 000(서명)

교원이 학교폭력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양식1-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사안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인지 내용	접수 사실 통보		확인	
		성명	연락처	관계		통보여부	통보일자	담당 교사	학교장
○○초 2000 -001	00년 00월 00일	000	.	학생	3.27.(금) 4교시 급식실에서 이00가 새치기를 하자 박00가 이00에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이00의 멱살을 잡자, 이00가 박00에게 “이새끼가 감히 어딜”이라고 하며 박00의 안면을 머리로 들이받음	통보 O 통보 O	00년 00월 00일	김00	이00

[참고] 사안번호 및 내용 등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시 자동 생성됨.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장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단,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양식1-3-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2.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내용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 다. 연계학교: (해당하는 경우만 표기)
 - 라. 사안단계: 사안접수
 - 마.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불임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학교폭력 사안보고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해당 사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사안번호의 “학교폭력 발생 사안(별칭: 사안카드)”에서 학교·교육(지원)청 모두 확인이 가능함

[양식1-4-(해당 시) 필수- 피해학생에게 징구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희망, 반대)합니다.

- 제도 도입 취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 분리합니다(법률 제16조 제1항).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피해학생은 가해 추정자-피해 추정학생의 의미입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최대 3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되면 종료됩니다.
- 관련학생 쟁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 기간에 포함(초일포함)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해당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을 실시합니다.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0○○년 월 일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중

[참고] 피해학생에게 가해자의 분리 반대 의사를 확인하여 서명을 받고 본 확인서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의 사안접수 보고서에 첨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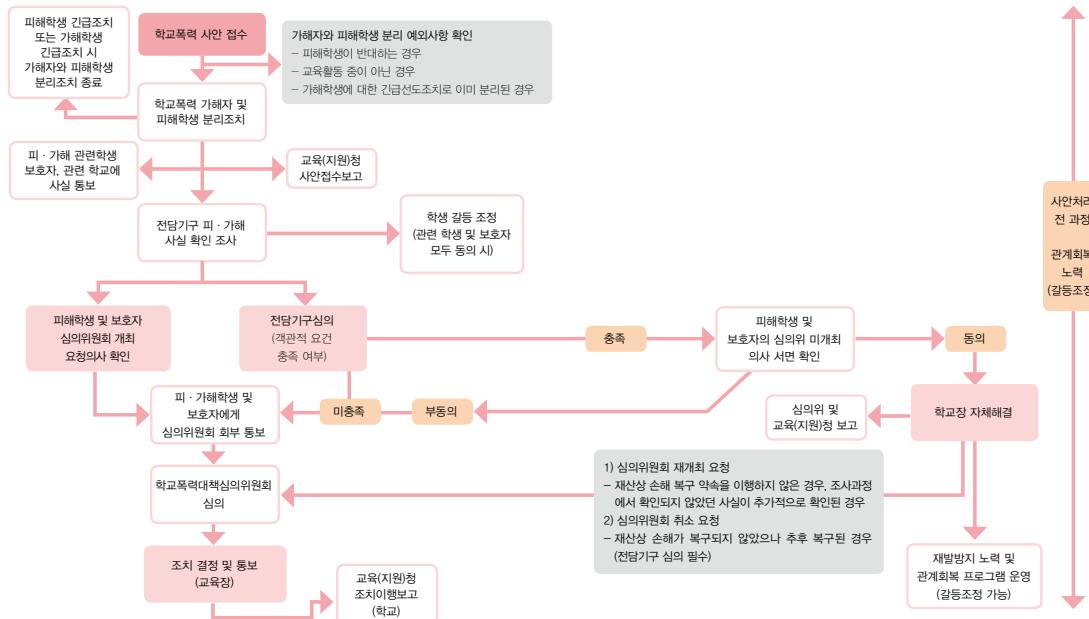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시)

①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②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안인지 및 조사: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합니다.
- 갈등조정: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 하에 갈등조정 전문가(교내·외)가 학생 서로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자발적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 4가지 객관적 요건 충족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 ⇒ 자체해결

* 전담기구 심의사항(객관적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전담기구 미제출 시, 미발급 판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전담기구 심의 전까지 복구하거나 복구 이행을 약속한 경우, 충족 판단)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학교장의 권한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종결짓는 절차로 피·가해 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객관적 요건 불충족 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부동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통해 피·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가해학생 조치목록**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서면사과	6호	출석정지
	2호	일시보호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금지	7호	학급교체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	학교에서의 봉사	8호	전학
	4호	학급교체		4호	사회봉사	9호	퇴학
	6호	그 밖의 조치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피·가해 학생 조치 결정 및 통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조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재를 유보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님의 대처방안

- 학부모의 올바른 대응은 자녀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이라면?	피해학생의 경우 위축되어 있거나, 상황을 과대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통해 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1)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하세요. 2)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주세요. 3)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4) 먼저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5)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p>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학부모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3)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4)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5)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6)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7)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	--

※출처 : (재)푸른나무재단

④ FAQ (자주묻는 질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 ▶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자체없이 분리하는 제도로써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고조된 학교폭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가해자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최대 3일, 출석 인정, 학습자료 제공).
- ※ 단, 피해학생이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지 않은 경우, 이미 긴급 선도조치로 분리된 경우 시행하지 않음

갈등조정의 중요성과 진행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학생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조정은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화를 통해 자기 책임과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 ▶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모두 동의 → 학교 측이 갈등조정 전문가에게 갈등조정 의뢰 → 전문가가 당사자에게 갈등조정을 위한 대화 모임 안내 → 일정 및 장소 결정 → 사전모임(당사자 개별) 실시 → 본모임(당사자 모두) 실시 → 사후모임(당사자 모두) 실시

심의위원회 출석이 필수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5항

- ▶ 심의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진술 뿐만 아니라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음이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시 전문가 의견 청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

-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나 치료비의 부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

- ▶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①가해학생 측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거나, ②학교안전공제회에 비용을 청구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심사를 거쳐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 제1호(심리상담) 및 제2호(일시보호) 조치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어야 함

학교폭력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동일 학교급 내(초등학생은 조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학교폭력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2,3,호 조치사항을 조건부로 기재유보합니다.
-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조치를 받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유보 조치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조치를 이행하여도 기재내용 유지)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제1호 ~ 제3호 조치
- ▶ 졸업 2년 후 삭제 : 제4호 ~ 제7호, 제8호 조치
(제4호~제7호 조치는 졸업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조치결정일이 6개월 경과하고, 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의 선도기능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⑤ 갈등조정 프로그램 지원 안내문

갈등조정 프로그램 지원 안내문

가정에 평안함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사건과 사람을 분리하고, 사람과 사람도 분리하는 방식의 공정한 처리 절차를 강조하다 보니, 교육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안(갈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과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아가 학교폭력 피해의 특징인 인간관계의 깨어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 간 오해가 있다면 이를 풀고, 진실한 사과와 용서가 이어진다면 서로가 화해하면서 인간관계 회복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진행 절차	진행 내용
사전 모임 (위원,당사자 개별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계회복지원 위원의 역할과 관계회복지원의 목적 안내상황 이해 및 피해/영향 파악(프로그램 특징: 회복적 질문 이용)본 모임 내용에 대한 바람과 참석 의사 확인
본 모임 (위원,당사자 모두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전 모임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본 모임의 목적 및 관계회복지원단 위원 역할 안내안전한 소통을 위한 모임의 진행 방식과 규칙 안내안전한 소통 과정 및 특징 안내 (피해와 영향 소통,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책임, 재발 방지 약속 등)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우리들의 약속' 작성 및 서명모임 참석에 대한 소감 나누기
사후 모임 (위원,당사자 모두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 과정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확인약속한 내용 실천 여부 확인필요한 경우 약속 내용 수정 가능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피해와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관계회복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학교장

학생 확인서

학 生				보 호 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 술 내 용						
1) 일시 장소	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 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 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 예시) 2)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 예시) 3) ()월 ()째 주 오전(오후) 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					
	2) 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 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 기간 (얼마동안)	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					
5) 사안 내용 (행위내용)	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고 하면서 짜르려고 하여 도망쳤다. 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럴지 뭐”,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 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					
6) 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 피해 정도	예시) ① 다리에 멍이 들어 파스를 붙였다. 예시) ② 코뼈가 부러져 6주간 치료를 받았다. 예시) ③ A를 보기만 해도 숨을 못 쉬겠다. 예시) ④ 학교가기 싫어졌다.					
8) 갈등조정 참여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조사자 (서명)

면담 진술서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명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 내용											
1) 언제	① 오늘	② 어제	③ 3일전	④ 몇주전	⑤ 몇달전	⑥ 봄	⑦ 여름	⑧ 가을	⑨ 겨울	⑩ 기타 (직접기재)	
2) 시간 (몇 시에)	① 오전	② 오후	③ 점심시간	④ 1교시 휴식시간	⑤ 2교시 휴식시간	⑥ 3교시 휴식시간	⑦ 4교시 휴식시간	⑧ 5교시 휴식시간	⑨ 6교시 휴식시간	⑩ 등교중	
	⑪ 하교중	⑫ 저녁 식사전	⑬ 저녁 식사후	⑭ 낮	⑮ 밤	⑯ 새벽	⑰ 학원 끝나고	⑯ 기타 (직접기재)			
3) 어디서 (장소)	① 교실	② 복도	③ 화장실	④ 식당	⑤ 운동장	⑥ 놀이터	⑦ 도서관	⑧ 강당	⑨ 교문앞	⑩ 인터넷	
	⑪ 아파트	⑫ 마트	⑬ 개인집	⑭ 공원	⑮ 길가	⑯ 학원	⑰ 옥상	⑯ 계단	⑨ PC방	⑩ 기타 (직접기재)	
4) 누가 (관련학생)	소속										
	성명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초, 중, 고				친구	상급생	타교생	성인	모름
	② 000										
③ 000											
5) 누구와 (기담자 목격자)	① 000										
	② 000										
	③ 000										
6) 무엇으로 (도구)	① 칼	② 연필	③ 주먹	④ 책	⑤ 기방	⑥ 인터넷	⑦ 휴대폰	⑧ 손발	⑨ 문자시진	⑩ 기타 (직접기재)	
7) 어떻게 (행위)	① 찌름	② 때림	③ 성추행	④ 던짐	⑤ 육함	⑥ 성희롱	⑦ 돈뺏기	⑧ 강제 심부름	⑨ 패드립	⑩ 뜻담화	
8) 왜 (이유)	① 이유 없이	② 악을 올리다고	③ 육을 했다고	④ 뜻담화를 했다고	⑤ 시비를 걸었다고	⑥ 패드립	⑦ 돈을 안준다고	⑧ 심부름을 안해서	⑨ 감정을 상하게해서	⑩ 기타 (직접기재)	
9) 얼마동안 (기간)	① 하루	② 매일	③ 1주~3주	④ 한달간	⑤ 3달간	⑥ 1학기	⑦ 1년간	횟수			
								한번	2~3회	4~9회 0상	
10) 피해정도	① 코피	② 멍들	③ 칠과상	④ 뻣	⑤ 골절	⑥ 안경깨짐	⑦ 옷찢김	⑧ 분함	⑨ 불안함	⑩ 등교기부 ⑪ 입원	

이상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면담교사 (서명)

면담 진술 보충서

2000.00.00. 00:00경 00학교 상담실에서 진행된 000학생 면담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1. 진술자 및 보호자

예시1)

- 면담 진술학생 : 00학교 1학년 000 전화 010-000-0000
- 보호자 : 성명 : 000 관계 학생 000의 모 전화 010-000-0000
주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000 APT 000-000

2. 면담 진술내용

예시1)

- 2000. 3월 하순 경 1교시 국어시간 종료 후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B, C, D등이 A를 둘러싸고 “바보 같은 놈” “찌질이”라고 하며 놀려 선생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함
- 그러나 B, C, D가 휴식시간이 끝나도록 계속 놀렸고 당시 주변에는 E, F, G 등 다수 학생이 있었으나 말리지 않아 너무 화가 났다고 함
- 특히, 그와 같은 일은 한달 전부터 이유 없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하며 신체적 피해는 없으나 그 충격으로 학교에 나오기 싫다고 함

예시2)

- 2000. 7월 16일 18시 경 학생교육문화회관 뒷골목에서 친구 A, B, C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리를 본 D, E, F가 “이게 무슨 냄새냐?”, “재수 없는 애들하고 같은 냄새 아니냐?”고 함
- A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항의하자 마치 그제서야 본 듯이 “너희가 여기 웬일이냐?”, “니들에게 한 말 아냐, 관심 끊어”라고 하여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함.
- 모든 상황은 C가 녹음까지 했다함

※ 유의사항

1. 면담진술서 내용을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
2. 작성자의 감정이나 판단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3. 지면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별첨 : 관련학생 ○○○ 면담 진술서 1부

(양식 2-4-필수-보호자가 직접 작성)

보호자 의견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인지 경위 및 인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 자녀의 상태 및 보호자의 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 관계 및 과거 조치 받은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 위한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및 자녀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이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보호자가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갈등조정 참여 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양식2-5-(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제목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및 긴급조치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초-20○○(20○○.○○.○○)

2.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및 긴급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사안접수(긴급조치)

라. 조치통보:

마.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조치일자	조치기간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0000.00.00.	0000.00.00~0000.00.00.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0000.00.00.	0000.00.00~0000.00.00.

붙임 1. 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1부.

2. 피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에 긴급조치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긴급조치 통보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양식2-6-(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조치내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호 조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기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보호자 귀하

○○ 학교장 (직인)

[참고]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긴급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양식2-7-(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 조치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시간)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6. 출석정지(○일) <p>※ 5호와 6호 조치는 병과 가능</p>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여부 (※ 6호의 경우)	<p>① 2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p> <p>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제17조제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보호자 귀하

○ ○ 학교장 (직인)

[참고]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긴급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양식2-8-필수-최종 보고서 작성용,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

1. 관련학생

접수일자	20○○년 월 일		담당자	
관련 학생	성 명	학 번	성 별	비 고
			남,여	장애 여부, 장애 영역 등 특이사항 기재

2. 사안 조사 경과

(※ 사안 조사 일자별로 사실 확인 경과를 작성. 피·가해 사실 내용은 3. 사실 확인 조사 결과에 기재)

일자	내 용
0월 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인지 및 관련 학생 사실 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SOS 시스템 사안 카드 입력 및 승인 요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조치 시행 여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법 및 기간 등 기재 <p>※ 분리 예외 경우 사유 작성</p>
0월 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또는 가해학생)과 상담 실시○ 피해학생(또는 가해학생) 보호자와 상담 실시○ 관리소장 000에게 학교장 명의의 CCTV 열람 및 복사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대한 관리소장 000의 협조로 본 사안과 관련된 CCTV 영상을 USB로 복사 받아 확보함
0월 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조치 실시
...	...

3. 사실 확인 조사 결과

가. 관련학생의 진술 중 일치되는 사실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 사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아래 붙임 예시를 참고하여 첨부

나. 특이사항

(학생선수, 성 관련 사안,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또는 다문화 학생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들의 요구 사항, 가해 관련 학생의 반성이나 피해 관련 학생과의 화해 정도,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을 기재)

- 붙임 1. A학생 확인서, SNS 대화내용
 2. B학생 확인서 및 근거자료
 3. C학생 확인서 및 근거자료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

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2. 장 소 :															
3. 참석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심의주제 : 사안번호 ○○초 20○○-000호 ()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5. 사안개요(※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결과에 대한 개요를 작성)															
6. 전담기구 판단 근거															
<table border="1"><thead><tr><th>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th><th>총족</th><th>미총족</th></tr></thead><tbody><tr><td>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td><td></td><td></td></tr></tbody></table>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총족	미총족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총족	미총족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총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 · ·															
※ 필수 확인 사항(법률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판단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table border="1"><thead><tr><th>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th><th>총족</th><th>미총족</th></tr></thead><tbody><tr><td>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td><td></td><td></td></tr><tr><td>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여부</td><td></td><td></td></tr><tr><td>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td><td></td><td></td></tr><tr><td>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td><td></td><td></td></tr></tbody></table>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총족	미총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여부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총족	미총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여부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7. 결정사항															
·															
8. 학교장 자체해결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양식3-2-(해당 시) 필수-학교장 자체해결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 2000-000

피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소속학교	성명	성별				
가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소속학교	성명	성별				
신고 내용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다수일 경우 모두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피·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							
<table border="1"><tr><td>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td><td>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td></tr><tr><td></td><td></td></tr></table>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p>*심의위원회 심의 시 피해 관련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1.6.23.자부터 시행).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성명(), 연락처()</p>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OO학교장 귀중								

[양식4-1-(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자체해결 보고(○○초-20○○-000호)

-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초-20○○(20○○.○○.○○)
-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사항(전담기구 심의결과)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접수일시: 20○○-○○-○○ 00:00(시간)
 - 사안번호: ○○초-20○○-000호
 - 사안단계: 자체해결
 -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긴급선도조치 취소(해당시)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 붙임 1.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전담기구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양식4-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초-000(20○○.○○.○○.))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초-20○○(2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일체(pdf파일) 1부. 끝.

(※ 붙임 파일 용량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ice talk을 통해 전송)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 관련 정보를 입력 시 문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파일을 모두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첨부파일 용량이 10M 초과시 첨부파일을 icetalk 메시지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 ○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1.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
2.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
3. (필수)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
4. (필수) 관련 학생 확인서 ()
5. (필수) 보호자 의견서 ()
6. (해당시 필수) 피해 · 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
7. (확보 시 필수) 증거자료 ()
8. 기타 ()

(양식4-2-3-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성별	보호자 성명
	주소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연락처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실거주지 주소)				
가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성별	보호자 성명
	주소 (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연락처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실거주지 주소)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유	<p>*피 · 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 · 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p> <p>※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조사 개요를 포함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A, B, C, D학생이 20○○. 3. 20부터 4.5.까지 XXX동을 통해 대화하면서 20○○. 3.30부터는 B학생을 대상으로 X동감옥을 만들고 욕설을 가한 사이버폭력(사안번호 ○○초 20○○-1)이 발생함○ 전담기구 심의결과, 본 사안이 자속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보아 4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또는○ 전담기구 심의결과 4개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피해 관련 학생 및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및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학교장 (직인생략)					

[양식4-2-4(3-2)-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양식4-2-5(2-8)-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

1. 관련학생

접수일자	20○○년 월 일		담당자	
관련 학생	성 명	학 번	성 별	비 고
			남,여	장애 여부, 장애 영역 등 특이사항 기재

2. 사안 조사 경과

(※ 사안 조사 일자별로 사실 확인 경과를 작성. 피·가해 사실 내용은 3. 사실 확인 조사 결과에 기재)

일자	내 용
0월 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인지 및 관련 학생 사실 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SOS 시스템 사안 카드 입력 및 승인 요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조치 시행 여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법 및 기간 등 기재 <p>※ 분리 예외 경우 사유 작성</p>
0월 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또는 가해학생)과 상담 실시○ 피해학생(또는 가해학생) 보호자와 상담 실시○ 관리소장 000에게 학교장 명의의 CCTV 열람 및 복사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대한 관리소장 000의 협조로 본 사안과 관련된 CCTV 영상을 USB로 복사 받아 확보함
0월 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조치 실시
...	...

3. 사실 확인 조사 결과

가. 관련학생의 진술 중 일치되는 사실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 사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아래 붙임 예시를 참고하여 첨부

나. 특이사항

(학생선수, 성 관련 사안,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또는 다문화 학생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들의 요구 사항, 가해 관련 학생의 반성이나 피해 관련 학생과의 화해 정도,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을 기재)

- 붙임 1. A학생 확인서, SNS 대화내용
 2. B학생 확인서 및 근거자료
 3. C학생 확인서 및 근거자료

학생 확인서

학 生				보 호 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 솔 내 용						
1) 일시 장소	<p>예시) 1) 200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p> <p>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p> <p>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p> <p>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p> <p>예시) 2)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p> <p>예시) 3) ()월 ()째 주 오전(오후)</p> <p>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p>					
	2) 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 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 기간 (얼마동안)	<p>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p> <p>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p> <p>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p>					
5) 사안 내용 (행위내용)	<p>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p> <p>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p> <p>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p> <p>※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p>					
6) 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 피해 정도	<p>예시) ① 다리에 멍이 들어 파스를 불였다. 예시) ② 코뼈가 부러져 6주간 치료를 받았다.</p> <p>예시) ③ A를 보기만 해도 숨을 못 쉬겠다. 예시) ④ 학교가기 싫어졌다.</p>					
8) 갈등조정 참여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조사자

(서명)

(서명)

보호자 의견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인지 경위 및 인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 자녀의 상태 및 보호자의 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회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 관계 및 과거 조치 받은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 위한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및 자녀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 보호자가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갈등조정 참여 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조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일시보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호 조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기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보호자 귀하

00학교장 (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 조치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학교에서의 봉사(○시간)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출석정지(○일) <p>※ 5호와 6호 조치는 병과 가능</p>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여부 (※ 6호의 경우)	<p>① 2000.00.0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p>			
<p>「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제17조제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p>				
20 년 월 일				
○○○, ○○○ 보호자 귀하				
OO학교장 (직인)				

(양식4-2-10-(해당 시) 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증거자료

* 사안번호: ○○초-20○○-000호

[참고] 관련학생의“SNS 대화 창 캡쳐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첨부하여 작성

(양식4-3-(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초-20○○-000호)

-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초-20○○(20○○.○○.○○)
-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접수일시: 20○○-○○-○○ 00:00(시간)
 - 사안번호: ○○초-20○○-000호
 - 사안단계: 심의취소요청
 -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취소 요청 사유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피해학생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의사 확인 및 전 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심 의 요건 충족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피해학생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의사 확인 및 전 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심 의 요건 충족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 붙임 1. 전담기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보고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 파일을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과 피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
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취소 가능

(양식4-3-2-(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신고 내용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조사 개요를 포함 (예시) 20○○.○.○. 00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A학생이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B학생이 A학생에게 축구공을 던져 A의 안경이 깨지고 우측 얼굴에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안임(학교 접수번호 ○○초 20○○-000호)			
	예시) ○ 20○○.○.○. 사안번호 ○○초 20○○-0호 사건에 대하여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심의하여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미제출, 지속성 없었음. 보복 없었음. 피해복구 약정서 제출) 피해 관련 ○○○ 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20○○.○.○.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피해 관련 학생이 가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진솔한 사과와 피해복구가 있었으므로 피해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두 학생 간의 관계회복 및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자체해결을 바라므로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요청함			
위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되었으나 관련학생과 보호자 요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사정 변경 시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취소 요청 가능(해당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팀과 사전 협의 반드시 필요)

(양식4-4-1-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00.00.0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초-200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초-2000(2000.00.0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재)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00-00-0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재)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일체(pdf파일) 1부. 끝.

(※ 붙임 파일 용량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ice talk을 통해 전송)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 관련 정보를 입력 시 문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파일을 모두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첨부파일 용량이 10M 초과시 첨부파일을 icetalk 메시지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제출

[양식4-4-2-(해당 시) 필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서

* 사인번호: ○○초-20○○-000호

피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성별
가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성별
신고 내용	<p>※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조사 개요를 포함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A, B, C 학생이 20○○. ○. ○. D학생을 폭행한 사안(사안번호 20○○-000호)으로 관련학생의 적극적 사과와 신체적 피해 복구 약속(치료비 00만원 지급)을 근거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였고 이에 피해학생 ○○○과 보호자 ○○○도 동의하였음(20○○.○.○.) ○ 그 이후 D학생이 가해 관련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D학생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심의위원회 심의 시 피해 관련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이)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00학교장 귀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 ○ 학교장 (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목차

1. (필수)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
2. (필수)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
3. (필수) 관련 학생 확인서 ()
4. (필수) 보호자 의견서 ()
5. (해당시 필수)피해 · 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
6. (확보 시 필수) 증거자료 ()

(양식4-5-3-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관련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 사안번호: ○○초 20○○-000호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

1. 관련학생

접수일자	20○○년 월 일		담당자	
관련 학생	성 명	학 번	성 별	비 고
			남,여	장애 여부, 장애 영역 등 특이사항 기재

2. 사안 조사 경과

(※ 사안 조사 일자별로 사실 확인 경과를 작성. 피·가해 사실 내용은 3. 사실 확인 조사 결과에 기재)

일자	내 용
0월 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인지 및 관련 학생 사실 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SOS 시스템 사안 카드 입력 및 승인 요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조치 시행 여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법 및 기간 등 기재 <p>※ 분리 예외 경우 사유 작성</p>
0월 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또는 가해학생)과 상담 실시○ 피해학생(또는 가해학생) 보호자와 상담 실시○ 관리소장 000에게 학교장 명의의 CCTV 열람 및 복사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대한 관리소장 000의 협조로 본 사안과 관련된 CCTV 영상을 USB로 복사 받아 확보함
0월 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조치 실시
...	...

3. 사실 확인 조사 결과

가. 관련학생의 진술 중 일치되는 사실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 사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아래 붙임 예시를 참고하여 첨부

나. 특이사항

(학생선수, 성 관련 사안,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또는 다문화 학생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들의 요구 사항, 가해 관련 학생의 반성이나 피해 관련 학생과의 화해 정도,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을 기재)

- 붙임 1. A학생 확인서, SNS 대화내용
 2. B학생 확인서 및 근거자료
 3. C학생 확인서 및 근거자료

학생 확인서

학 생				보 흐 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 솔 내 용						
1) 일시 장소	<p>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p> <p>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p> <p>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p> <p>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p> <p>예시) 2)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p> <p>예시) 3) ()월 ()째 주 오전(오후)</p> <p>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p>					
	2) 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 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 기간 (얼마동안)	<p>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p> <p>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p> <p>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p>					
5) 사안 내용 (행위내용)	<p>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p> <p>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p> <p>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p> <p>※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p>					
6) 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 피해 정도	<p>예시) ① 다리에 멍이 들어 파스를 불였다. 예시) ② 코뼈가 부러져 6주간 치료를 받았다.</p> <p>예시) ③ A를 보기만 해도 숨을 못 쉬겠다. 예시) ④ 학교가기 싫어졌다.</p>					
8) 갈등조정 참여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조사자

(서명)

(서명)

보호자 의견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인지 경위 및 인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 자녀의 상태 및 보호자의 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회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 관계 및 과거 조치 받은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 위한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및 자녀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 보호자가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갈등조정 참여 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조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일시보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호 조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기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보호자 귀하

00학교장 (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 조치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학교에서의 봉사(○시간)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출석정지(○일) <p>※ 5호와 6호 조치는 병과 가능</p>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여부 (※ 6호의 경우)	<p>① 2000.00.0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p>			
<p>「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제17조제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p>				
20 년 월 일				
<p>○○○, ○○○ 보호자 귀하</p>				
<p>○○학교장 (직인)</p>				

증거자료

* 사안번호: ○○초-20○○-000호

[참고] 관련학생의“SNS 대화 창 캡쳐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첨부하여 작성

(양식5-1-필수-조치 이행 결과 보고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이행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초-20○○(20○○.○○.○○)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이행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조치이행

라. 조치이행 여부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조치결정	취소 요청 사유	비고
○○초등학교	○ - ○	○○○	3호 학교내봉사	이행	
○○초등학교	○ - ○	○○○	1호 심리상담	불이행	학생이 원하지 않음

마. 조치이행 결과 제반 증빙자료: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행 결과 증빙자료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조치이행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관련 학생의 조치 이행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수시 보고함. 조치 이행 결과 증빙자료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담당교사가 자유롭게 작성하여 첨부함.

[양식5-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통합 관리(기재유보 포함) 대장

학교명	사안번호	학년도	입학년도	학년	반	번호	이름	학교폭력조치사항	조치일자	이행완료일자	생기부기재유보	생기부기재/미기재사유삭제	졸업예정일	졸업과동시삭제	졸업직전전담기구심의	졸업2년후삭제대상	졸업2년후삭제	졸업2년후삭제

[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 제2호 · 제3호) 학교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유보

- 가해학생이 조치사항(제1호 · 제2호 · 제3호)을 이행하고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 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기재하지 않음.
- 다만,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함.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됨.

〔양식6-(해당 시) 필수-분쟁조정 신청 시 보호자 작성용〕

분쟁조정 신청서

* 사안번호:

[양식7-1-(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종결처리 보고(○○초-000(20○○.○○.○○.))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2. 학교폭력 종결처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종결처리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붙임 1.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종결처리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양식7-2-(해당 시) 필수-사안 종결 보고 시 내부결재 및 보고용)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성별	보호자 성명	
사안 조사 내용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성별	보호자 성명	
종결처리 사유	<p>○사안 내용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p> <p>※ 아래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결처리 가능함(교육(지원)청의 컨설팅을 받고 처리). 종결처리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아님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p>					
	1.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안				O, X 표기	
	2. 학생이 아닌 사람(성인, 학적이 없는 청소년), 불특정인에 의한 학교폭력(성폭력 포함)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은 경우				O, X 표기	
	3.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 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교원의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단순 채무관계, 절도, 놀이 등) - 피해자로 신고받은 학생이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O, X 표기	
	위와 같이 학교장 자체종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00학교장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 종결처리 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양식7-3)-(해당 시) 필수-사안 종결 보고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성별
신고 내용				
<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p>				
<p>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p>				
<p>OO학교장 귀중</p>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졸업예정자인 귀하의 자녀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오니, 2000.00.00까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성명	○○○ (실명으로 기재)	학년 반	○학년 ○반
조치결정 통보일	○○.○○.○○	조치 관청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 사항	<p>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까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6호 출석정지(3일)</p>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신청서조치이행 확인서 사본(필요 시)가해학생 부가적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학생, 보호자 모두) 사본(필요 시)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4·5·6·7호만 해당)은 해당 학생이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가 원칙이나,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해당 학생의 조치 이행 여부,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학교생활의 충실도 등에 관하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있음
※ 2023.2.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삭제 시기 및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
- 1.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2. 재학 중 학교폭력 사안으로 2회 이상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학교장 자체해결된 사안은 관련 없음)

000학교장

(양식8-2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학생성명	○○○ (실명으로 기재)	학년 반	○학년 ○반	보호자 성명	김△△ (실명으로 기재)
조치결정 통보일	○○.○○.○○.		조치 관청	○○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 사항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0○○.○○.○○.까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6호 출석정지(3일)				
신청 사유	※ 학생 및 보호자가 조치이행 여부(부가적 특별교육 포함),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학교생활의 충실도 등 위주로 자유롭게 작성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4 · 5 · 6 · 7호만 해당)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

1.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2. 재학 중 학교폭력 사안으로 2회 이상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학교장 자체해결된 사안은 관련 없음)
- ※ 2023.2.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삭제 시기 및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양식8-3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시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 심의 보고서(예시)

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2. 장 소 :

3. 참석자

○○○	○○○
○○○	○○○
○○○	○○○

4. 심의주제 :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5. 삭제 대상자 명단 및 판단 근거

1) 졸업과 동시 삭제 대상자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호·2호·3호)

- ○학년 ○반 ○○○(20○○.○.○. 1호 조치)
 - ○학년 ○반 ○○○(20○○.○.○. 1호, 3호 조치)
 - ○학년 ○반 ○○○(20○○.○.○. 2호, 3호 조치) … …
- 삭제 대상자 여부 판단 심의 없이 조치사항 삭제

2)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대상자(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4호, 5호, 6호, 7호)

- 대상자 명단 및 전담기구 판단 근거

학년반 성명	조치 사항	판단 근거	결정사항
○학년 ○반 ○○○	4호 조치(20○○.○.○.) 6호 조치(20○○.○.○.)	.	(선정, 미선정)
○학년 ○반 ○○○	7호 조치(20○○.○.○.)	.	(선정, 미선정)

※ 심의 기준: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학교생활의 성실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및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학교생활 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참고 서류(예시):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 관련 서류, 삭제 신청서 등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4·5·6·7호만 해당)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

-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재학 중 학교폭력 사안으로 2회 이상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학교장 자체해결된 사안은 관련 없음)

※ 2023.2.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삭제 시기 및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양식9-1 선택-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 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받는 자	■ 전입교 및 상급학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학교폭력 피해학생 성명, 학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사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자료의 이용이 제한됨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상기의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00학교장 귀중

※ 본 양식은 현재 학교에서 보관하며,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는 [양식9-2]를 첨부하여 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학교명		○○○중학교					
학년	2	반	2	번호	2	성명	○○○
피해학생 보호조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 결정		○○교육지원청 교육장 (2000.00.00)					
<p>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p>							
<p>0000학교장 귀중</p>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사람은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성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의 의미함
- 한편,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폭력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개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함

2

관련 개념

- (성희롱)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

신체적 성희롱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
- (성폭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포함

3 성폭력의 유형

행위 유형별 분류

유형	내용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행위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심신상실(장애, 수면, 술에 취함, 의식 잃음) 또는 항거불능(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성희롱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동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스토킹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사이버성폭력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대상별 분류

유형	내용
아동성폭력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 청소년성폭력과의 차이점: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됨
청소년성폭력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장애인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법률상 분류

법률명	행위유형	비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제7조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 · 치상 / 강간 등 살인 · 치사	제9, 10조
	아동 · 청소년이 음용물의 제작 · 배포 등	제11조
	아동 · 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3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4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17조제2호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
	특수강간 등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제7조
	강간 등 상해 · 치상 / 강간 등 살인 · 치사	제8, 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제3조~제9조, 제14조의 미수범	제15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 등 살인 · 치사	제301조 제301조의2
형법	미성년자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
	강도강간	제339조
	제339조의 미수범	제342조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예방 교육		
학생	학부모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실시 다양한 특성화 교육 실시 학생활동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학기별 1회) 학부모 상담주간 활용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예방 교육 실시(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담당 교원 및 보건교사 연수

※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 제고

II

성폭력 사안의 신고

 1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 신고

 성범죄 신고의무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라 「초 · 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아동 · 청소년 대상(만 19세 미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교직원이 관련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권보호, 징계 및 조치가 이루어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 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안처리 교직원의 유의사항

- 성범죄에 해당되는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교직원이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학교장은 교내 성고충 상담원(보건교사 등)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를 긴급 보호조치 하고, ① 117 신고센터, ②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1899-3075), ③ ONE-STOP지원센터, ④ 여성긴급전화(1366), ⑤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학생이 비밀유지를 하도록 주지시킨다. 만약 비밀을 유출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교직원이 개인상담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안 경우,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법률상 신고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 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또한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 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 청소년 내용: 법률정보 및 상담 안내 현황: 광역자치단체 시도단위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해바라기 아동센터 (032-423-1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내용: 의료지원(성폭력 외상치료, 심리상담, 심리치료, 놀이치료) 법률지원(법적절차 지원, 피해자 조사지원) 상담지원(사례접수, 면담조사, 연계지원서비스, 가족상담) 현황: 서울,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 전남, 경기, 충북, 전북, 경남
ONE-STOP지원센터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032-582-1170)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032-280-56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청소년 내용: 의료지원(응급처치, 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진료, 기타 외상치료) 상담법률지원(사례접수 및 관리, 24시간 응급상담, 법적자문) 수사지원(피해자 조서작성, 진술녹화지원, 증거채취, 고소지원) 현황: 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2), 광주(1), 대전(1), 경기(3),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1), 경남(1), 제주(1)
여성긴급전화 (1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청소년 내용: 긴급구조 및 보호를 위한 전화상담 안내(365일 24시간 상담) 현황: 광역자치단체 시도단위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2-4651-4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성폭력 피해 청소년 내용: 의료지원 연계(응급처치, 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진료, 외상치료) 상담법률지원 연계(사례접수 및 관리, 24시간 응급상담, 법적자문) 수사연계 지원(진술녹화, 동행지원, 고소 지원) 현황: 서울(20(3)), 부산(6(1)), 대구(4), 인천(7(2)), 광주(11(1)), 대전(5(1)), 울산(4(1)), 세종(1), 경기(37(4)), 강원(6), 충북(7(1)), 충남(10(2)), 전북(12(2)), 전남(10(1)), 경북(16(2)), 경남(14(1)), 제주(3(1))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032-517-5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청소년 및 성인 내용: 피해영상을 긴급 삭제 지원,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등 현황: 인천(1), 기타 지역

관련 조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 및 제342조의 죄

라.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제34조(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67조(과태료)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부과 · 징수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비밀준수 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은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같은 법 제34조제3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65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1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밀준수 의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역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 학생 및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력 관련 비밀누설금지 위반사례〉

- 피해학생의 상담 녹취파일을 제3자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하여 피해학생 관련 자료 외부 유출
- 피해사실을 들어 알게 된 학생과, 피해자라고 찾아온 피해학생들에게 비밀이 보장되도록 개별상담하지 않고 집단 상담 실시

관련 조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 · 청소년 및 대상아동 · 청소년의 주소 · 성명 · 연령 · 학교 또는 직업 · 용모 등 그 아동 ·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4조(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안조사

-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안조사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아동학대(성관련 포함)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이 경우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긴급조치 포함)를 원하면 학교폭력 사안처리하여야 한다.

▣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기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사안조사 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심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사안 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상담기관에 협조 요청을 한다.
 - ※ 학교폭력 기해 · 피해학생 중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요청)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함.

▣ 조사 유의사항

- 성폭력 사안 조사 시 조사자는 기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확인 · 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 성폭력 사안 조사 시 조사자는 관련 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유발 사례〉

-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 4명을 성추행한 것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학교 및 교육청에서 조사 실시 후
 - 상담교사가 기해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등 부당하게 상담
 - 교육청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아니지?” 등 피해학생에게 부당한 표현
 - 피해학생의 상담 녹취파일을 제3자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하여 피해학생 관련 자료 외부 유출

- 성폭력 사안 조사 시에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피해학생과 기해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 만일,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라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 ※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또는 보호자)이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음
- ※ 다만,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심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 · 의결 해야 함
- ※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해야 하며,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계로 대신할 수 없음.

3 성폭력 관련학생 조치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 보호(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 받으면 경우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이수'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내 교사나 전문상담 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성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4호	학급교체	지속적인 성폭력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하고길에서의 동반 등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 운영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시행령 제73조제6항, 시행령 제89조제5항).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성폭력 가해학생의 교육·선도조치

- 선도가 긴급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먼저 부과한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 긴급 출석정지 사유 :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사, ② 성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성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 행사, ④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성폭력 피해 의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하여 성폭력 사안 조사
(관련학생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등)
- 필요시에 전문상담기관 협조 요청(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1899-3075), 117,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상담소 등)
- 상담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

신고(수사기관)

- 교육, 의료, 아동복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함

피·가해학생 긴급 조치

- 피·가해학생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 배제, 신속한 징계조치 이행)
- 응급 및 안전 조치
- 학교内外 상담실(Wee센터,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증거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 교사 동행, 피해학생 지지
- 친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로 연계
- 관련학생 보호자 연락 및 교육청 통보

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 (학교) 상담, 사건 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청) 단위학교 성폭력사안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 치료비 선지원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결정
- (학교장 조치 이행) 조치 결정사항 통보 및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재발방지 노력
- (사후 관리) 피·가해 학생 추수 지도, 소속 교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사안처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학교 기숙사는 정규 교육과정 종료 이후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기주도적 생활능력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 환경이 가능하도록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사감, 기숙사 관리 담당교원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 학교 기숙사(생활관, 학사 등) 내 학교폭력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 학교의 장은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자체없이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생활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공간 분리를 위한 노력
 - ※ 피·가해학생이 같은 침실 공간을 이용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가해자의 침실 공간을 분리 배치함.
 - ※ 분리 배치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기숙사 내에서의 동선 분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함.
 - ※ 그 밖에 침실 외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학생을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식사 장소, 숙소 층간 분리, 기숙사 내 여가시간 등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분리 노력 필요).
 - 가해행위가 명확하고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시·공간 분리가 어렵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교육·선도조치를 시행하여 피해학생과의 분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피·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내 교사나 전문상담 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또는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기숙사 침실공간 분리 배치, 피·가해학생 기숙사 내 동선 분리, 피해학생 또래 지킴이 지정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 · 선도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제1호, 제2호, 3호, 5호, 제6호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5호와 6호는 병과조치 가능).
- 긴급조치 범위 :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주인을 받아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교육 · 선도 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여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 학교의 기숙사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관리)사감의 근무수칙(순회지도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시설)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시설)남녀 학생이 구분 배치(건물, 층)되어 있으며, 출입통제가 되고 있는가?
- (관리)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외박 관리, 외부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안)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사안)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기숙사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 · 정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기숙사 운영계획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사안)기숙사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2회 이상)을 실시하였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

1.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内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 · 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 · 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 연구 · 교육 · 계도 등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3. >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 ·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 1. 26.〉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2. 1. 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8. 20.〉
-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 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1., 2015. 12. 22.〉
-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1., 2021. 3. 23.〉
-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12. 22.〉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1. 3.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9. 8. 20.〉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9., 2019. 8. 20.〉
-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자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신설 2019. 8. 20.〉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19.〉
[제록개정 2011. 5. 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 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2021. 3. 23.〉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21. 3. 23.〉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 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주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6., 2012. 3. 21.〉
-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3. 21.〉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0.〉
- ④ 삭제 〈2019. 8. 20.〉
- ⑤ 삭제 〈2019. 8. 20.〉
-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 8. 20.〉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0.〉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0.〉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0.]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 운영 ·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 · 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1. 3. 23.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
 -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3. 23. >
 - 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
 -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

- 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 7. 30.〉
-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30.〉
-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11. 28.】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内外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 ·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교内外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1. 26., 2021.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8. 2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 ·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5. 10.〉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2. 25., 2020. 12. 31.〉

1. 해당 시·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해당 시·도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5. 10.〉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개정 2016. 5. 10.〉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6. 11., 2020. 2. 25.〉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 · 군 ·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 · 검사 · 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
-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 군 · 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6. 11., 2016. 5. 10.〉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 · 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개정 2014. 6. 11., 2020. 2. 25.〉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 ·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 ·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6. 11.〉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 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 · 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7. 31., 2012. 9. 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 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 ·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 · 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2. 25.〉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2. 25.〉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 · 검사 · 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2. 25.〉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 2020. 2. 25.〉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5. 10., 2020. 2. 25.〉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개정 2016. 5. 10., 2020. 2. 25.〉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 5. 10., 2020. 2. 25.〉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 2.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 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25.]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 ·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2.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3.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22.〉

-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1. 9. 29.〉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25.〉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조 삭제 〈2020. 2. 25.〉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25.〉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25.>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제목개정 2020. 2. 25.]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 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

- 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 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개정 2020. 12. 31.〉
-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12. 31.】
-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7. 6. 20.】
- 제34조 삭제 〈2021. 3. 2.〉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본조신설 2018. 12. 3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2.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 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27호, 2020. 5. 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 · 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부록6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23.3.1.자)

소속 및 업무	직위	이름	사무실	비고(담당업무)
시교육청 회복적생활교육팀	장학사	조일육	420-8482	학교폭력 대응 전반
	장학사	고윤경	420-8484	학교폭력예방교육, 책임교사수업경감
	장학사	정호재	420-8488	아동학대사안 보고, 갈등조정자문단
	주무관	이주연	420-8487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인정기관 지정
	상담사	임혜연	420-8486	사안처리 상담, SOS시스템 관리
	상담사	이수진	420-8372	사안처리 상담, 전국단위 실태조사
남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전항배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오경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각종 공문/자료 취합
		상담사	김영수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변호사	최진영	학교폭력 법률 자문
	심의위원회 운영	장학사	김기경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장학사	이병식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주무관	박소영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김정우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북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상우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이우민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취합/수업경감
		변호사	이가영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상담사	윤 미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심의위원회 운영	장학사	김소영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주무관	최인수	전국단위 실태조사
		주무관	정소영	예산관련 심의위원회 간사

소속 및 업무	직위	이름	사무실	비고(담당업무)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이인호	460-6055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위현아	460-6056 전국 단위 실태조사, SOS시스템 사안접수
		변호사	김동현	460-6057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상담사	박영경	460-6061 학교폭력 관련 상담
	심의위원회 운영	장학사	김지은	460-6090 심의위원회 업무(초·중등)
		장학사	김태숙	460-6091 심의위원회 업무(초·중등)
		주무관	강소영	460-6092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김정원	460-6093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용우	560-6796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임혜진	560-6797 전국단위 실태조사, 전학, 자료 취합 등
		상담사	윤성희	560-6798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변호사	김우재	560-6799 학교폭력 법률 자문
	심의위원회 운영	장학사	이유안	560-6615 심의위원회 업무(초·중등)
		장학사	이구현	560-6623 심의위원회 업무(초·중등)
		주무관	복정자	560-6627 심의위원회 간사
		주무관	서경자	560-6628 심의위원회 간사
		주무관	조창호	560-6680 심의위원회 간사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고민수	930-7826 사안 처리 및 심의위원회 업무
		주무관	정찬준	930-7827 심의위원회 제반사항 SOS시스템 사안접수

자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지도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김재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조일육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고윤경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이대용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주무관	이주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상담사	김일봉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상담사	이수진

검토위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전항배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지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병식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최진영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상우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미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이가영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인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지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조윤정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동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용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구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신병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김우재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장학사	이욱진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발행일 : 2023년 2월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http://www.ice.g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